

2024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E-BOOK
바로가기





2024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2024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1차시 캠핑의 이해

캠핑의 정의와 관련 개념	010
1. 캠핑의 정의	010
2. 캠핑의 유형과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	011
캠핑산업 현황	013
1. 이용자 현황	013
2. 캠핑장 현황	020
국내외 캠핑산업 트렌드	022
1. 국내 캠핑 트렌드	022
2. 국외 캠핑 트렌드	024

2차시 캠핑장 관련 법규의 이해1

야영장 설치 관련 법령	028
1. 야영장 관련 법령의 체계	028
2. 야영장 설치 관련 법령	028
관광진흥법의 주요내용	032
1. 야영장업의 개념	032
2. 야영장업의 종류	033
3. 야영장업 등록기준	033
4. 변경등록, 승계 및 휴·폐업	036
5. 제재 사항	037

3차시 캠핑장 관련 법규의 이해2

야영장 시설과 안전·위생 기준	040
1. 야영장 시설의 종류	040
2. 안전·위생 기준	043
안전사고와 법적 책임	050
1. 민사 책임	050
2. 형사 책임	051
3. 행정 제재	052
4. 책임보험 또는 공제	052

4차시 캠핑 용품의 이해

캠핑 용품 분류 및 특징	056
1. 캠핑 용품 주요 카테고리 분류	056
2. 카테고리별 용품 종류 및 특징	056
캠핑 용품 안전 유의사항	064
1. 텐트	064
2. 취사용품(스토브, 그릴 등)	064
3. 캠핑의자 및 테이블	065
4. 조명 및 랜턴	065
5. 캠핑 가구	065

5차시 캠핑의 안전관리

캠핑장 전기안전	068
1. 전기와 전기안전	068
2. 전기로 인한 화재 사례와 예방법	069
캠핑장 가스안전	072
1. 가스와가스안전	072
2. 가스로 인한 화재 사례와 예방법	072
3. 화재 예방 요령	074
재난재해 유형별 대응	076
1. 재난재해 피해 사례	076

6차시 캠핑장 응급처치 실무

야영장 응급처치	080
1. 응급처치의 목적	080
2. 응급처치의 개념	080
3. 응급처치 시 알아야 할 법적 문제	080
4. 응급처치의 원칙	080
상황별 응급처치	081
1. 심폐소생술	081
2. 인공호흡	082
3. 기도폐쇄	082
4. 골절	083
5. 화상	083
6. 출혈 및 비출혈	084
7. 감전	085
8. 가스중독	085
9. 열사병, 일사병	085

2024 야영장 사업자 안전관리 매뉴얼

7차시 캠핑장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서비스 마인드

캠핑 고객에 대한 이해와 사업자 마인드 셋	088
1. 캠핑 인원 및 동반 유형별 고객 니즈 및 서비스 고려요소	088
2. 숙박 유형별 고객 니즈 및 서비스 고려요소	089
3. 고객의 정보 습득 이용환경	089
4. 사업자 마인드셋	089
캠핑장 사업자가 제공할 서비스 유형 및 관리	090
1. 온라인 정보 제공 관리	090
2. 유형별(Case) 고객 응대	090
3.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관리	091
[붙임1] 취소 및 환불 등 운영 정책 정보	092

8차시 캠핑장 마케팅의 이해와 실무

캠핑장 마케팅 이해와 필요성	096
1. 마케팅이란?	096
2. 마케팅의 구성 요소	096
3. 마케팅의 필요성	097
매출 향상을 위한 마케팅 기법	098
1. 신규고객유입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실행 방안	098
2.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재방문 고객 늘리기 마케팅 전략/실행 방안	100

9차시 지속가능한 야영장을 위한 환경과 위생

위생관리	104
1.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등의 관리방안	104
환경관리	105
1. 올바른 분리수거	105
2.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105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운영 시 주의사항	106
1.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운영 수요	106
2. 안전 관련 사항	106
3. 규칙 및 정책	107
4. 서비스 및 편의시설	107

10차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야영장 운영 비법

캠핑장 운영 Q&A	110
------------	-----

부 록

1. 고캠핑 홈페이지(gocamping.or.kr) 소개	116
2. 야영장업 서류심사 등록시 체크리스트	117
3.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	118
4. 야영장업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118
5. 안전·위생점검 체크리스트(지자체용)	120
6. 정부의 야영장업 지원사업	121
7. 방염성능검사 요약서	122
8. 지하수 음용수 수질검사 성적서	124
9. 위반사항 벌칙조항(타법 포함)	125
10.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129
11.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증권	131
12. 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	132
13. 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의 한도	137



2024
야영장 사업자
안전관리
매뉴얼



1차시

캠핑의 이해

캠핑의 정의와 관련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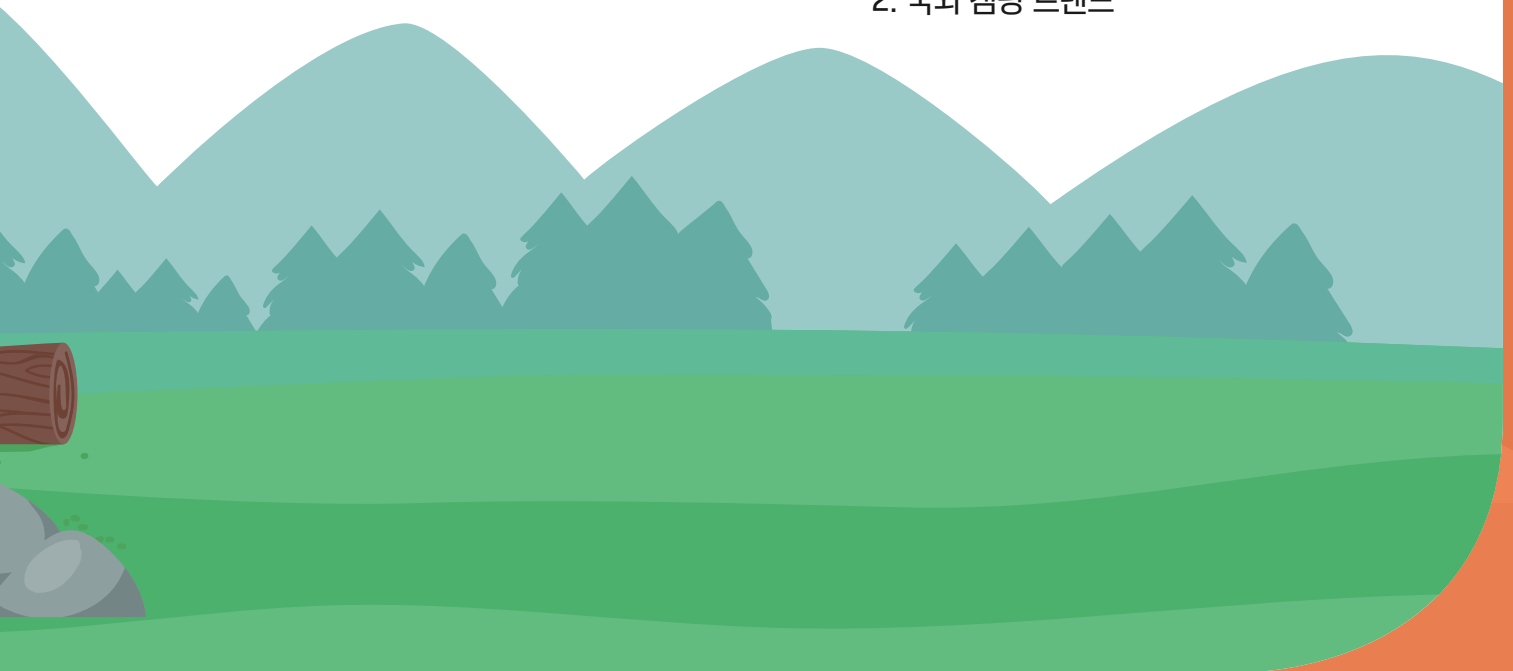
1. 캠핑의 정의
2. 캠핑의 유형과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

캠핑산업 현황

1. 이용자 현황
2. 캠핑장 현황

국내외 캠핑산업 트렌드

1. 국내 캠핑 트렌드
2. 해외 캠핑 트렌드



캠핑의 정의와 관련 개념

1. 캠핑의 정의

» 국내 여가의 대표적인 형태인 캠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 캠핑은 다양한 여가 활동 중에서도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음
- 캠핑은 인류가 정착생활을 하기 전까지 비나 바람을 막아주며 외부 맹수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주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였음
- 인류가 정착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전쟁기간 동안 병사들과 군인들이 생활하던 공간으로, 또 실크로드를 오가던 상인들이 지내던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오늘날 여가로서의 캠핑

-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화, 공업화로 인구가 밀집되었음
- 동시에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생긴 도시거주자가 복잡한 도시를 잠시 떠나 자연을 즐기기 위해 여가의 수단으로서 캠핑을 삼기 시작하였음
- 이후 상업용 캠핑장이 문을 열며 여가로서의 캠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오늘날의 캠핑

- '텐트와 같이 임시로 지은 초막 등에서 일시적인 야외활동을 하는 여가활동'으로 정의됨
⇒ 거주하고 있는 집을 벗어나 자연 속에 마련한 임시 거처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자연을 느끼며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

» 캠핑의 장점

- 캠핑의 역사와 정의를 통해 우리 캠핑의 기본적인 속성과 이점을 이해할 수 있음
- 캠핑을 통해 자연과 접촉하고 소통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며, 함께 한 이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을 줌
- 가족, 친구와 함께 참여하는 캠핑은 디지털 전자기기에서 벗어나 깊이 이야기하고 함께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특히 캠핑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매우 유익함
⇒ 가족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모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 캠핑의 유형과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

(1) 다양한 캠핑 유형 및 관련 개념

» 이동 수단에 따른 분류

오토캠핑(Auto camping)

- 자동차를 의미하는 오토(Auto)와 캠핑(Camping)이 조합된 용어로, 자동차를 이용해 캠핑에 필요한 짐을 싣고 캠핑장으로 이동하여 캠핑을 하는 것을 의미함
- 보통 가족 단위의 캠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음

백패킹(Backpacking)

- 주로 하루 이상 하이킹을 하며 캠핑 장비를 백팩에 넣어 등에 지고 다니는 형태의 야외 레크리에이션으로 정의됨
- 개인이 필요한 장비를 등에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토캠핑의 장비보다 간소한 형태(소박한 텐트, 1인용 침낭, 간단한 취사도구 등)로 구성됨
- 백패킹과 같이 간소한 장비를 싣고 자전거 및 바이크로 이동하는 바이크패킹도 있음

RV(Recreational Vehicle : 레크리에이션 차량) 캠핑

- 주로 캠핑카, 트레일러와 같은 레크리에이션 차량(Recreational Vehicle)을 이용한 캠핑을 의미함
⇒ RV 차량은 이동과 숙박이 가능한 차량으로 우리가 흔히 카라반, 캠핑카 등으로 부르는 것이 모두 포함됨
- RV는 자체 동력 유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자체 동력이 없는 견인형 RV : 견인차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카라반, 캠핑용 트레일러 등
 - ②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며 생활공간이 연결된 일체형 RV : 캠핑카

»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분류

글램핑(Glamping)

- '화려하다(Glamorous, 글래머러스)'와 '캠핑(Camping)'이 합쳐진 신조어로 캠핑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여타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즐기는 캠핑을 의미함
- 캠핑은 텐트, 타프 등 초기 장비 구입이라는 진입장벽과 직접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몸만 이동하면 되는 편안한 글램핑을 선호하기도 함

캠프닉(Campnik)

- 캠핑(Camping)과 피크닉(Picnic)을 합친 용어로, 당일치기로 한강 등 공원에서 일부 캠핑장비를 활용하여 소풍처럼 가볍게 즐기는 캠핑을 의미함
- 원칙적으로 캠핑은 집이 아닌 곳에서 밤을 보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일치기여행, 피크닉 등 기타 야외 활동과 구별되지만, 캠프닉 역시 캠핑 장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사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음
- 서울, 경기권역 등 대도시 위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브랜드의 캠프닉을 활용한 팝업 이벤트 개최로 활성화되고 있음

차박

- 팬데믹 이후 가장 화두가 되었던 캠핑 유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으로 이해됨
-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합의된 차박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차박은 본인이 평소에 운전하는 승용차를 활용한 캠핑을 의미함
- 차박은 차량 안에서 숙박하기 때문에, 텐트를 포함한 여타 캠핑 장비를 챙기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편리성을 지님



오토캠핑



백패킹



RV캠핑



글램핑



차박



캠프닉

캠핑산업 현황

1. 이용자 현황

(1) 우리나라 캠핑인구 현황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캠핑인구

- 우리나라 캠핑인구는 2016년부터 통계자료(GKL/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산출되고 있음
- 2016년 1박이상을 하는 캠핑객 기준 310만명에 이르던 캠핑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20년 기준 534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타인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캠핑 방식이 안전한 야외활동 공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
- 우리나라캠핑인구는2022년 기준 583만명에 이르러, 2021년523만명 대비 약 60만명 이상 증가하였음

〈표1-1〉연도별 캠핑 인구수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숙박	4,033,275	3,985,234	5,340,047	5,230,951	5,835,307
당일	1,442,316	1,390,126	1,554,542	997,060	3,201,390
숙박+당일	5,475,591	5,375,360	6,894,589	6,228,011	9,036,697

* 한국관광공사(2023). 2022년 기준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

» 30~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가운데, 20대도 3년 연속 증가 추세

- 2022년 기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30대가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40대(28.9%), 20대(22.4%), 50대(11.0%), 60세 이상(7.8%) 순으로 나타났음
-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30~40대의 비중은 2020년 이래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20대는 2020년 이후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즉 캠핑인구가 젊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함

〈표1-2〉 캠핑 이용자 연령대 비율

(단위 : %, %p)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22-'21)
19~29세	22.2	18.3	21.4	22.4	1.0
30대	27.7	33.1	30.3	29.2	-1.1
40대	29.6	28.7	32.0	28.9	-3.1
50대	17.7	15.2	13.0	11.0	-2.0
60세 이상	2.7	4.7	3.2	7.8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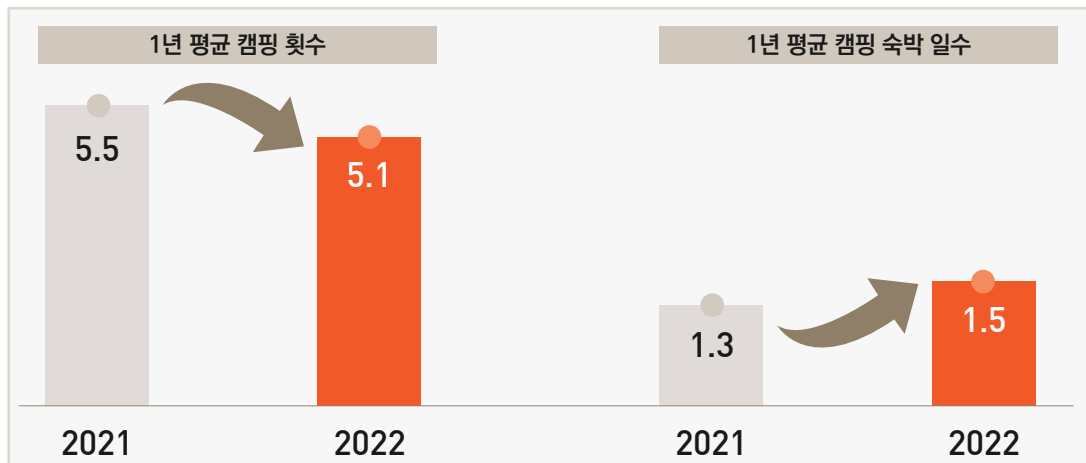
*한국관광공사(2023). 2022년 기준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2) 캠핑이용자의 행동적 특성

① 캠핑횟수/숙박일수

» 연간 평균 캠핑 횟수는 5.1회, 1회 평균 숙박일수는 1.5일

- 2022년 국내 캠핑객의 연간 평균 캠핑 횟수는 5.1회로 나타나 2021년(5.5회) 대비 다소(0.4회) 감소하였음
- 하지만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한 해 동안 1인의 국내 숙박여행 횟수가 2.55회인 것을 고려할 때(문화체육관광부, 2022 국민여행조사), 캠핑객의 연간 캠핑 횟수(5.1회)는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한편 1회 평균 캠핑 횟수는 1.5일로 나타나 2021년(1.3일) 대비 15.38%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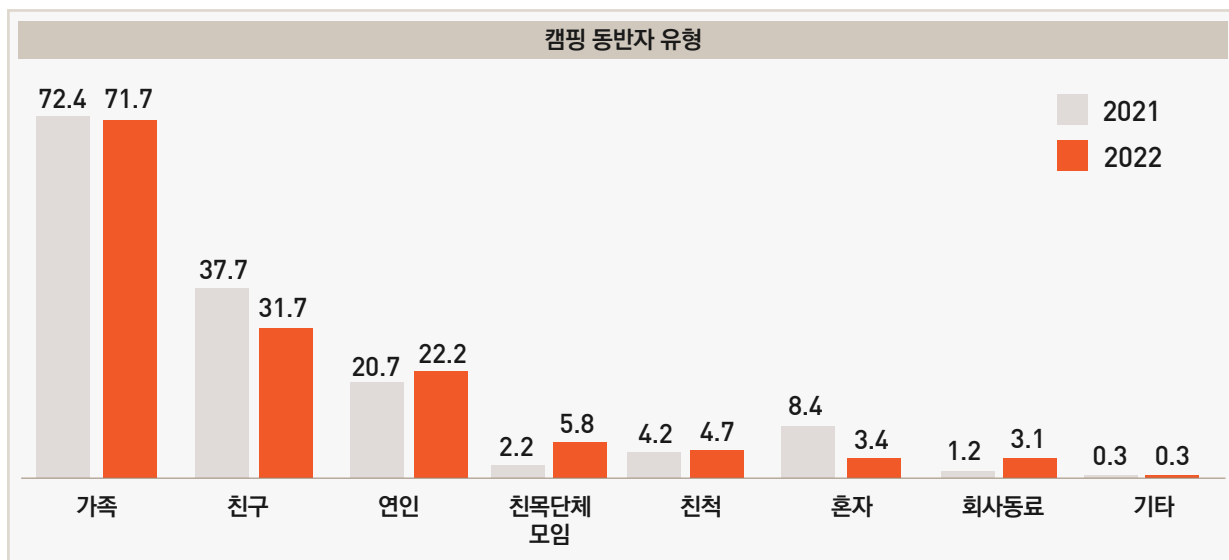


*한국관광공사(2023). 2022년 기준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② 캠핑동반자

» 대표적인 가족 참여 여가, 캠핑

- 캠핑은 가족 여가로서 가장 크게 활용되고 있음
- 캠핑이용자의 동반자 유형의 부동의 1위는 '가족(71.7%)'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친구(31.7%), 연인(22.2%), 친목 단체/모임(5.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중복응답)



*한국관광공사(2023). 2022년 기준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③ 캠핑 시 선호 숙박 유형

» 대표적인 가족 참여 여가, 캠핑여전히 일반텐트가 가장 많이 선호되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글램핑과캠핑카, 카라반 및 트레일러 선호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캠핑 시 선호하는 숙박 유형은 일반텐트(55.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글램핑(45.4%), 캠핑카, 카라반 및 트레일러가 33.9%, 차(일반차량/개조차량)이 16.7%, 고정형 카라반이 10.3%로 나타났음(중복응답 기준)
- 한편 선호숙박 유형의 비율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일반텐트’ 선호 비중은 2019년 74.4%에서 2022년 55.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글램핑’과 ‘캠핑카, 카라반 및 트레일러’ 선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 최근 캠핑 트렌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표1-3〉선호 숙박 유형

(중복응답, 단위 : %, %p)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22-'21)
일반텐트	74.4	65.6	58.0	55.4	-2.6
글램핑	6.4	9.4	12.0	45.4	33.4
캠핑카, 야영용 트레일러 및 트레일러	10.7	15.9	16.3	33.9	17.6
차(일반차량/개조차량)	-	-	3.4	16.7	13.3
고정형 야영용 트레일러	-	-	-	10.3	-
기타	1.3	0.8	0.0	1.4	-

*중복응답으로 합이 100%를 초과함

* 차(일반차량/개조차량) 항목은 2021년 신규 추가, 2021년 신규 추가, ‘고정형 카라반’ 항목은 2022년 신규 추가된 항목

* 2019~2021 선호 숙박 유형에서 2022년 고려 숙박 유형으로 문항 재설계

*한국관광공사(2023). 2022년 기준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④ 소비금액/품목

» 1가구 캠핑 1회 시 지출비용은 403,000원 , 식음료비, 야영장 이용료 순으로 지출

- 2022년 가구당 캠핑 1회 시 지출비용은 403,000원(1인당 109,000원)으로 나타났다
- 지출비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식음료비'가 156,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야영장 이용료(104,000원)' '교통비(74,000원)', '여가 스포츠 활동비(57,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21년 대비 가구당 캠핑 1회 지출 비용이 13.3%(62,000원) 감소하였으며, 1인당 캠핑 1회 지출 비용은 24.5%(35,410원) 감소하였음
- 2021년 대비 항목별 지출비를 비교해보면, '기타' 항목이 33.3%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이어서 '교통비'가 22.1%, '야영장 이용료'가 20.6%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캠핑 1회 가구당 전체 및 항목별 지출액은 2021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2022년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표1-4〉1회 캠핑 전체 소요 비용 및 구성비 지출내역

(단위 :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22-'21)
1인당 캠핑 전체 소요 비용	가구당	295,000	394,000	465,000	403,000	-13.3
	1인당	88,323	123,125	144,410	109,000	-24.5
구성비 (%)	식·음료비	121,000	143,000	157,000	156,000	-0.6
	야영장 이용료	84,000	113,000	131,000	104,000	-20.6
	교통비	56,000	84,000	95,000	74,000	-22.1
	여가 스포츠 활동비	29,000	46,000	58,000	57,000	-1.7
	기타	6,000	5,000	18,000	12,000	-33.3

*천원 이하 단위 절삭으로 합계가 맞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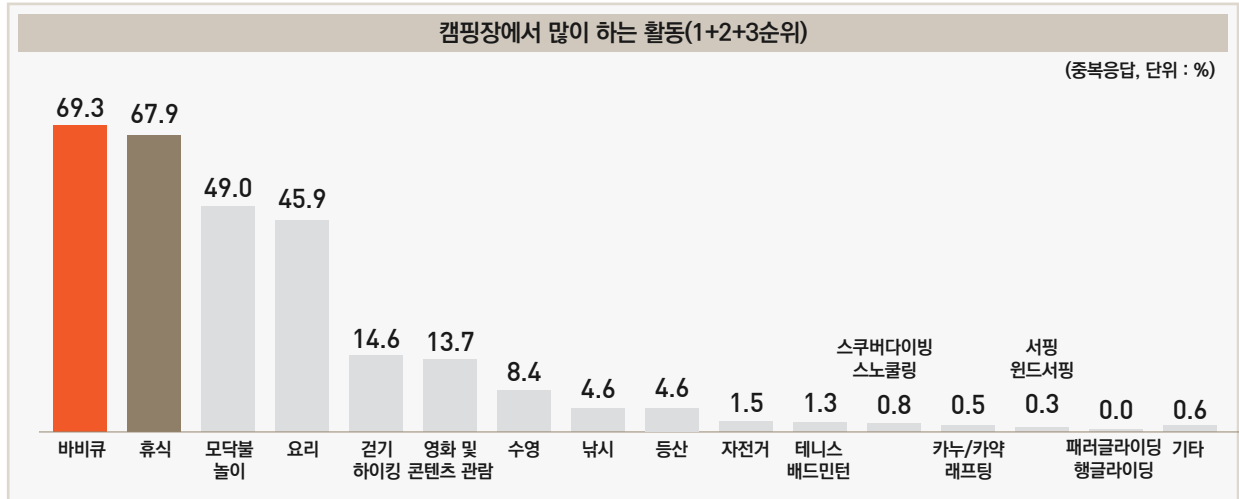
*2019년 캠핑 평균 인원=3.34명, 2020년 캠핑 평균 인원=3.20명, 2021년 캠핑 평균 인원=3.22명, 2022년 캠핑 평균인원=3.68명

*한국관광공사(2023). 2022년 기준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⑤ 캠핑장 주요활동

» 바비큐와 휴식이 지속적으로 선호되는 활동

- 2022년 캠핑장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1위는 '바비큐'로 캠핑참여자의 69.3%가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휴식(67.9%)', '모닥불 놀이(49.0%)', '요리(45.9%)', '걷기/하이킹(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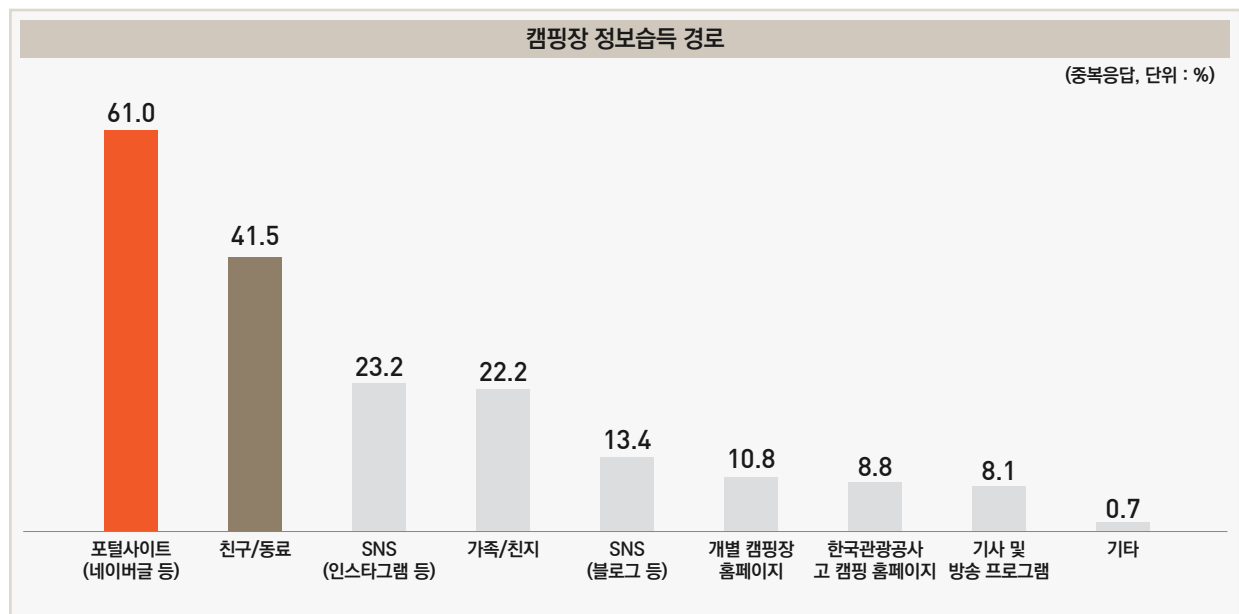


*한국관광공사(2023). 2022년 기준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⑥ 캠핑정보 습득 경로

» 캠핑정보는 '포털사이트'와 '친구/동료'를 통해 가장 많이 습득

- 캠핑정보 습득 경로는 '인터넷 사이트' 중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등)가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친구/동료(41.5%)',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23.2%)', '가족/친지(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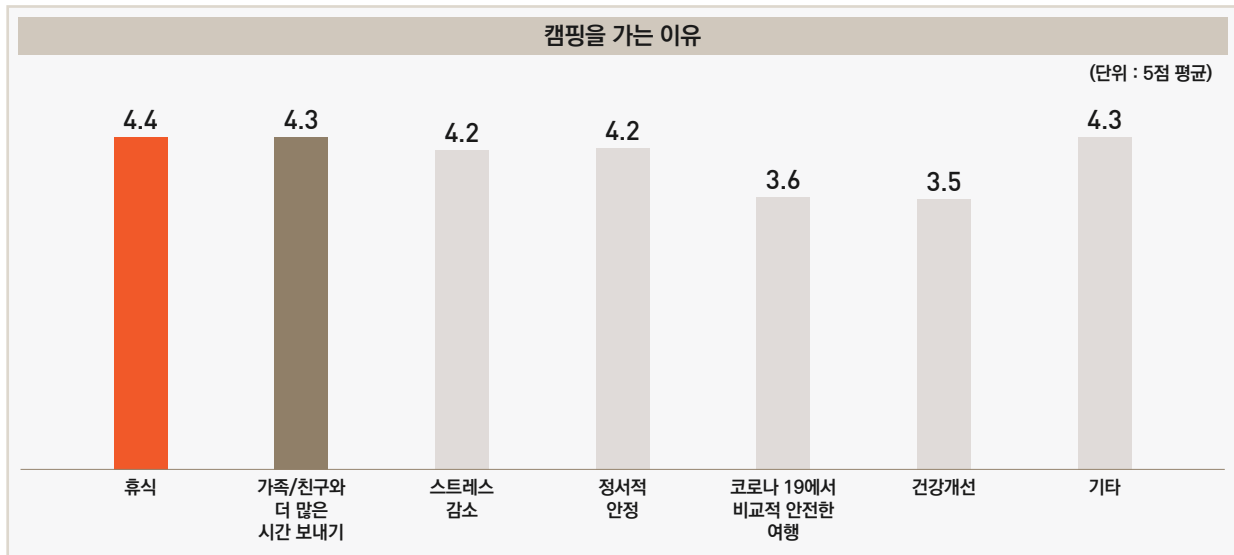
*한국관광공사(2023). 2022년 기준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3) 캠핑이용자의 심리적 특성

① 캠핑이유

» ‘휴식’과 ‘가족/친구와 더 많은 시간’이 캠핑을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 캠핑을 가는 이유로는 ‘휴식’이 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가족·친구와 더 많은 시간’,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한국관광공사(2023). 2022년 기준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② 캠핑장 선택속성

» 위생/기본 시설 및 안전/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관리, 접근성, 이용료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캠핑장 예약안내 및 절차, 캠핑장 주변 관광자원,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 위생/기본 시설 및 안전/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관리, 접근성, 이용료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캠핑장 예약안내 및 절차, 캠핑장 주변 관광자원,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 캠핑 시 사람들은 캠핑장을 선택할 때 어떠한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 202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1순위로 고려하는 요인은 ‘위생시설 운영행태 및 관리’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기본 시설 운영행태 및 관리’, ‘안전·전기·가스시설 운영행태 및 관리’가 각각 2위 3위로 나타났음
 - ⇒캠핑이용자들은 위생·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어서 ‘캠핑장 접근성’과 ‘캠핑장 이용료’가 각각 4위, 5위를 차지하였음
 - 그 외에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각각 9위, 10위를 기록한 ‘캠핑장 예약 안내 및 절차’와 ‘캠핑장 주변 관광자원’과 11위를 차지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 2019년 이래 중요도가 증가 추세에 있음

〈표1-5〉캠핑장 선택 기준별 중요도

(단위 : 5점기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22-'21)
위생시설 운영행태 및 관리*	-	-	-	4.60	-
기본시설 운영행태 및 관리*	-	-	-	4.31	-
안전·전기·가스시설 운영행태 및 관리*	-	-	-	4.29	-
캠핑장 접근성	3.98	4.22	4.18	4.22	0.04
캠핑장 이용료	3.89	4.13	4.16	4.13	-0.03
편의시설 운영행태 및 관리	-	-	-	4.09	-
캠핑장 직원 친절성	4.07	4.04	4.05	4.02	-0.03
캠핑장 이용수칙	4.01	4.09	3.94	3.97	0.03
캠핑장 예약 안내 및 절차	3.68	3.89	3.85	3.95	0.1
캠핑장 주변 관광자원	3.55	3.73	3.76	3.84	0.08
체육시설 운영행태 및 관리	-	-	-	3.65	-
장애인 편의시설	2.75	2.93	2.92	3.07	0.15

*한국관광공사(2023). 2022년 기준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2. 캠핑장 현황

(1) 국내 캠핑장 연도별 발전 현황

» 2022년 국내 야영장 수, 2021년 대비 8.6% 증가

- 국내 야영장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935개로 2021년(2,703개) 대비 232개(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운영방식별로는 총 캠핑장 2,935개(100.0%) 중에서 민간운영은 2,441개(83.2%), 공공운영은 494개(16.8%)로 구성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캠핑장 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1-6〉 2021~2022 캠핑장 모집단의 권역별 변화 현황

(단위 : 개, %)

구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22-'21)	
	모집단 수	비율	모집단 수	비율	모집단 수	증감률
전체	2,703	100	2,935	100	232	8.6
수도권	747	27.6	807	27.5	60	8
충청권	434	16.1	486	16.6	52	12
호남권	320	11.8	346	11.8	26	8.1
대경권	338	12.5	385	13.1	47	13.9
동남권	311	11.5	336	11.4	25	8
강원권	553	20.5	575	19.6	22	4

〈표1-7〉 2021~2022 캠핑장 모집단의 운영방식 현황

(단위 : 개, %)

구분	2021		2022		전년 대비('22-'21)	
	모집단 수	비율	모집단 수	비율	모집단 수	증감률
전체	2,703	100	2,935	100	232	8.6
민간운영	2,178	80.6	2,441	83.2	263	12.1
공공운영	525	19.4	494	16.8	-31	-5.9

(2) 사이트 유형별 현황

» 2022년, 일반사이트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글램핑 사이트와 카라반 사이트 수는 크게 증가

- 2022년 기준 전국의 사이트 유형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사이트 92,988개(100.0%) 중에서 일반 사이트 47,121개(50.7%), 차박 사이트 31,376개(33.7%), 글램핑 사이트 7,768개(8.4%), 카라반 사이트 5,005개(5.4%), 개인 카라반 사이트 1,697개(1.8%)로 구성됨
- 2021년 대비 2022년의 경우, 전체 사이트 4,232개(4.8%) 증가, 일반 사이트 31,599개(-40.1%) 감소, 글램핑 사이트 1,504개(23.9%)증가, 카라반 사이트 1,275개(3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사이트는 크게 감소한 반면, 글램핑 사이트와 카라반 사이트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1-7〉2021~2022 캠핑장 모집단의 운영방식 현황

(단위 : 개, %)

구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22-'21)	
	모집단 수	비율	모집단 수	비율	모집단 수	증감률
전체	88,735	100.0	92,988	100.0	4,253	4.8
일반 사이트*	78,720	89.0	47,121	50.7	-31,599	
차박 사이트	-	-	31,376	33.7	31,376	12
글램핑 사이트	6,285	7.1	7,789	8.4	1,504	23.9
야영용 트레일러 사이트**	3,730	4.0	5,005	5.4	1,275	34.2
개인 야영용 트레일러 사이트	-	-	1,697	1.8	1,697	

* 2022년 조사부터 일반사이트를 일반 및 차박사이트로 세분화

** 2022년 조사부터 카라반 사이트를 카라반 및 개인카라반사이트로 세분화

국내외 캠핑산업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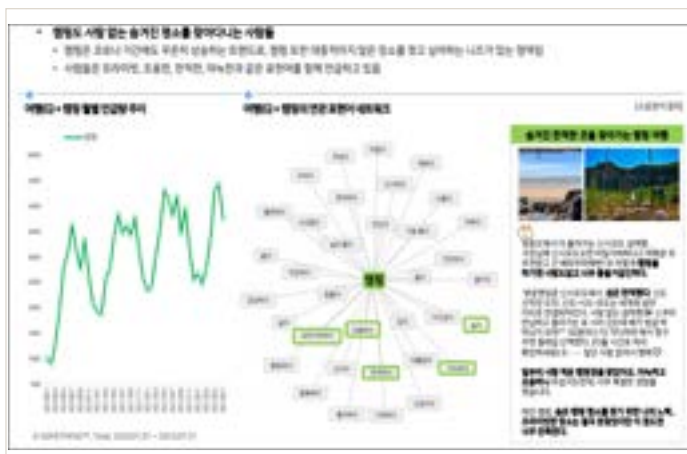
1. 국내 캠핑 트렌드

» RV(Recreational Vehicle)/차박 수요 증가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캠핑용 자동차(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의 신규 등록대수는 2019년 3,002대에서 2020년 5,682대, 2021년 기준 5,673대로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음
- 캠핑이라는 여가 활동이 대중화되었다는 점과 함께 지난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길이 막힌 사람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여가 활동으로 캠핑카 및 카라반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됨
- 특히 구매력을 갖춘 40~60대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한 건수는 2019년 2,195건에서 규제완화(튜닝가능 차종 및 튜닝 허용범위의 확대) 이후 2020년 7,709건, 2021년 10,36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이와 함께 본인이 평소 사용 차량을 활용한 차박 역시 새로운 유형의 캠핑으로 급증하였음
- 차박은 확장어닝, 에어매트 및 취사도구 정도만 준비하면 되는 간단한 캠핑의 형태를 띠며
- 2022년 기준 캠핑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차박을 이용하는 이유는 '각종 장비를 챙기는 부담이 적어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어서' 등의 이유가 언급되었음

» 숨겨진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캠핑 여행 트렌드

- 나만의 명소 여행이 국내여행 트렌드로 나타남에 따라, 캠핑도 사람 없는 숨겨진 명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
- 캠핑과 여행을 키워드로 연관표현어 소셜 네트워크 분석 자료(한국관광공사, 2024)에 따르면, '프라이빗하다', '조용하다', '한적하다', '숨다', '아늑하다'의 연관어가 함께 나타났음



한국관광공사(2023). 2024년 관광트렌드 전망 및 분석보고서

» 반려견 동반 캠핑객 수요 증가

- 애견 인구 1,500만 시대로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애견 전용 야영장과 이벤트가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캠핑 이용자의 22.4%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캠핑 시 반려동물 동반 경험에 있는 응답은 48.5%로 나타났음
- 이러한 수요 증가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핑을 콘텐츠로 차박캠핑 이벤트를 개최하였음
- 최근 애견 동반 이용자가 방문하여 애견 샤워시설, 어질리티 시설 및 간식 등을 유료로 함께 판매하며 수익 다각화를 꾀하는 캠핑장도 생겨나고 있음

» 레저 동반 캠핑 증가

- 한편, 캠핑객들이 점차 경력이 쌓여가고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일부 캠핑객들은 캠핑장 내에서 즐기는 활동(예: 바비큐/불멍) 외에도 캠핑 장소를 기점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다양한 아웃도어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카누, 낚시, 자전거 등)과 결합된 형태의 캠핑장이 증가하고 있기도 함



반려견 동반 캠핑객 수요 증가



레저 동반 캠핑 증가

2. 해외 캠핑 트렌드

» RV(Recreational Vehicle)/차박 수요 증가

- 일본 RV협회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캠핑카는 팬데믹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관심을 받아왔던 유형으로, 2019년 기준 총 누적 캠핑카 대수는 11만 9,400대로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도 RV 산업은 역대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2021년 RVIA(Recreational Vehicle Industry Association)가 발표한 COVID-19 팬데믹 이후 미국 캠핑산업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미국 RV 산업은 역대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미국인들이 캠핑을 더욱 편리하게 즐기기를 원하는 수요 때문으로 나타났음
- 한편, 북미지역에서 차박은 'Car Camping'으로 불리우는데, Car camping은 RV를 포함한 다른 유형의 숙박과 달리 자신의 차량으로 여행하고 잠을 자는 사람들로 정의됨
 - Car camping은 캠핑장 요금, 장비비용 절감 등 여행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편의성, 안전성 등의 이유로 선호되며 특히 나홀로 여행자에게 인기가 높음
 - Car camping 인구는 2022년 46.8만 명에서, 2023년 229.9만명, 2024년 8월기준 374.8만 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글램핑

- 글램핑 역시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대도시 근교에서 몸만 가면 되는 글램핑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한편 북미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글램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음
- 신규 캠핑족의 34%가 글램핑족으로 나타남에 따라, 글램핑은 처음 캠핑을 접하는데 주요한 유형임으로 파악됨

» 동계캠핑 증가

- 최근 북미지역에서는 동계캠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비수기 캠핑시즌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변화로 캠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구 4명중 약 1명은 2023/2024 겨울에 동계캠핑에 참여하였음
- 이는 2021/2022년 대비 14%. 2022/2023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로 향후 지속적으로 동계캠핑 수요 증가를 전망하는 수치임
- 동계캠핑의 증가는 RV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RV 및 차박 캠핑 증가에 따라 향후 동계캠핑이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KOA(2024). 2024 Camping & outdoor hospitality report: Camping trips and travel experiences.

» 친환경 야영장 트렌드

- 최근뉴노멀 시대 ESG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어가면서 해외에서는 조금 더 캠핑의 친환경적, 친사회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 특히 기후변화 시대에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캠핑이나,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배려 캠핑장 조성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유럽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캠핑장으로 선정된 프랑스 마세루 캠핑장은 캠핑장 내 모든 시설이 태양광 시스템에 의해 100% 자체 생산된 전기만으로 운영됨(한국관광공사글로벌관광트렌드, 2023)
- 한편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캠핑장을 예약할 수 있는 영국 기반의 유료 플랫폼인 더 그리너 캠핑 클럽(The Greener Camping Club)도 찾아볼 수 있음
 - 더그리너 캠핑 클럽은 17,000명의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인증된 친환경적인 캠핑 및 글램핑 장소 160곳을 연결함
 - 인증되기 위해서는 100% 재생 가능한 전기로 부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캠프장, 모든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독립형 화장실이 있는 장소, 태양열 온수 샤워 시설, 유기농 농장 숙박 시설, 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가득 찬 캠프장 상점 등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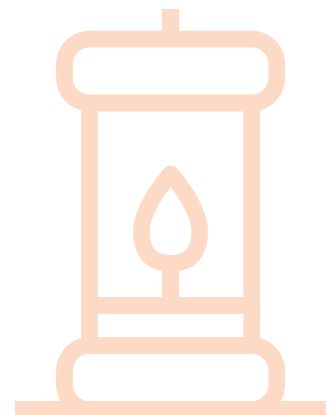


프랑스 마세루 캠핑장



그리너 캠핑 클럽 홈페이지

<https://www.marvilla-parks.com/en/campsite/le-domaine-de-massereau> / <https://www.greenercamping.org/start-a-campsite/>



2024
야영장 사업자
안전관리
매뉴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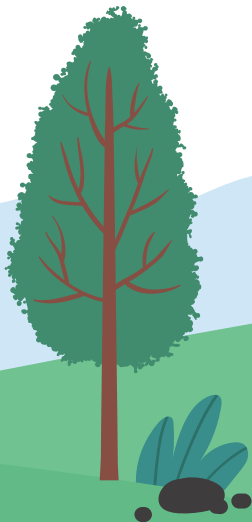
2차시 캠핑장 관련 법규의 이해1

야영장 설치 관련 법령

1. 야영장 관련 법령의 체계
2. 야영장 설치 관련 법령

관광진흥법의 주요내용

1. 야영장업의 개념
2. 야영장업의 종류
3. 야영장업 등록기준
4. 변경등록, 승계 및 휴·폐업
5. 제재 사항



야영장 설치 관련 법령

1. 야영장 관련 법령의 체계

» 야영장 관련 법령 구분

- ① “야영장의 설치 근거”에 관한 법령
- ② “야영장업”에 관한 법령으로서의 관광진흥법

2. 야영장 설치 관련 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야영장업을 영위하기 위해 야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야영장 설치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는 것임
- » 부지 선정에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 사람들이 야영하고 싶은 장소이면서도 안전해야 한다는 사실적인 사항 외에도 해당 토지가 야영장이 설치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인 제한 여부, 즉 ‘입지’사항을 확인해야 함
⇒입지사항으로서 토지의 용도지역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

(2)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 국토계획법 하위 국토교통부령으로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 도시계획시설규칙)은 기반시설인 유원지에 휴양시설로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하나로 ‘청소년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음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4) 「자연공원법」

» 국립(도립, 군립 등)공원 내 야영장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과 같은 자연공원에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의 하나로 야영장이 있음(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자연휴양림 내 야영장

- 자연휴양림 안에도 편의시설로서 야영장, 오토캠핑장 설치 가능함(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숲속야영장(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등) 조성이 가능함(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숲나들e 홈페이지

(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 국가, 지자체 등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하나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음
- 그 구조와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제9조), 해당 공동부령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아직 야영장에 대한 자세한 구조·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음

(7)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수욕장 내 야영장

- 해수욕장에는 편의시설의 하나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음[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3)]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폐교 야영장

- 폐교재산은 교육용 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용 시설 중 하나로 ‘야영장’이 포함되어 있어서(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많은 폐교들이 야영장 시설로 개조되어 운영되고 있음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9)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내 야영장 등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의 기타시설로서 야영장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3)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개발행위가 가능(제12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한데, 여기에 청소년야영장(별표 1-자), 자연휴양림 내 야영장(별표 1-아), 자연공원법에 따른 야영장(별표 1-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영장(별표 1-머) 등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마을공동, 10년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가 가능함(별표 5-사)

관광진흥법의 주요 내용

1. 야영장업의 개념

(1) 야영장업이란

» 「관광진흥법」야영장업

- 관광사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 중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부 항목 중 하나로 야영장업을 규정하고 있음
- 야영장업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숙박업과의 구별

- » 야영장 내에 글램핑이나카라반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할 경우 숙박업과 유사한 영업방식이 되지만,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규율되는 반면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규율되며, 글램핑이나카라반 등은 그 법적 성격이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및 설비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숙박업의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숙박시설)에 한하며,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숙박시설의 종류는 일정 범위로 한정되어 양자는 제공되는 시설이 구별됨

[참고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5. 숙박시설

- 가.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나.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9. 야영장 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야영장업의 종류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됨)

(1) 일반야영장업

- » ‘일반야영장업’이라 함은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함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2) 자동차야영장업

- » ‘자동차야영장업’이라 함은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 흔히 일반야영장과 대비하여 자동차야영장을 ‘오토캠핑장’이라 부름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3. 야영장업 등록기준

(1) 공통기준

- » 야영장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야영장업과자동차야영장업 모두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추어야 함(「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난 취약지역의 경우 관련 보안대책,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 즉 야영장 입구, 관리동, 취사실, 화

장실 등과 같이 이용객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야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긴급방송시설을 갖추거나 앰프 최대출력이 10와트 이상이면서 가청거리가 250미터 이상인 메가폰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

-관리실,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에 소화기가 배치되어야 하고, 야영용 천막 2개소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가 비치되어야 하고, 특히 일반적인 분말형태 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가 10년이며, 10년 이내라 하더라도 정기점검을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체크하여 적절히 교체해 주어야 한다.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한다.



(바)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만약 관리요원을 별도로 두기 어려운 경우 개장 동안 사업주가 상주하여야 한다.

(사)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폐교야영

(자) 장의 경우 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 적용 제외)

(차) 국제법 상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2)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3)「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4)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 5)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 위 공통기준에 더하여 일반야영장은 다음 개별기준에 따라야 함

(가) 침수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보행 중 텐트 줄에 걸려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천막 공간 외에 텐트 간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해야 하며, 야영장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이 상시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

» 위 공통기준에 더하여 일반야영장은 다음 개별기준에 따라야 함

- (가) 침수차량 1대의 주차공간과 그 옆에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야영장 내 차량이 통행 가능하도록 차로도 확보되어야 한다.
-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야영장 내 전기시설은 전기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이 필수시설인 자동차야영장의 경우 간이화장실 설치 불가능



- (다) 자동차 출입을 위해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만약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라) 특례기준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야영장이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원지 야영장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면서 토지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과 달리 다음 요건만을 충족하여도 야영장업이 가능함

(ㄱ) 공통기준

- 1)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2)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3)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4)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5)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 6)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ㄴ) 개별기준

1) 일반야영장업

- 가)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할 것
- 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2) 자동차야영장업

- 가)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 다)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위 일반기준의 공통기준이나, 개별기준과 차이점은 '공통기준'에 있어서 '대피소 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일반야영장'의 경우 하수도시설 및 화장실을 설치,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가능한 여건을 갖추면 된다는 점, '자동차야영장'의 경우에도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등이 이용가능한 여건만 갖추면 된다는 점 등이 있음

4. 변경등록, 승계 및 휴·폐업

(1) 변경등록

❖ 야영장업 등록을 한 후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부지 면적의 변경,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법 제4조 제4항, 제5항,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 기존 일반 야영장을 자동차야영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등록이 아니라 신규등록 하여야 함
- 특히 야영시설(글램핑)이나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등)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급·배수 시설 설치 방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개발행위를 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자체 건축부서에 문의 및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2) 승계

❖ 야영장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기존 야영장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법 제8조 제1항), 양수인은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동조 제4항)

❖ 야영장사업자가취소·정지 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나, 양수인이 양수 당시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승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동조 제3항)

(3) 휴·폐업

❖ 야영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30일 이내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함(법 제8조 제8항, 시행규칙 제17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의정 2019. 4. 25.>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본 책상의 제4호는 영리 관광사업에 적용 가능합니다.

영수번호	신청일자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상 호 주 소	주요업종코드 (한국관광협회 4자)	처리번호
영수(영수증) 주사업장 소재지 지 등록번호 업 종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각 없이 관광사업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인) (직인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인	주요업종
1.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각 없이 관광사업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각 없이 관광사업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인) (직인 또는 날인)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본 책상의 제4호는 영리 관광사업에 적용 가능합니다.

신청인	주요업종
1.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각 없이 관광사업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각 없이 관광사업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인) (직인 또는 날인)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본 책상의 제4호는 영리 관광사업에 적용 가능합니다.

신청인	주요업종
1.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각 없이 관광사업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각 없이 관광사업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인) (직인 또는 날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의정 2020. 12. 15.>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 통보서 [] 신고서

본 책상의 제4호는 영리 관광사업에 적용 가능합니다.

영수번호	신청일자	처리기간 : 1일
신청인 상 호 주 소	주요업종코드 (한국관광협회 4자)	처리번호
영수(영수증) 주사업장 소재지 지 등록번호 업 종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신고)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인) (직인 또는 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지방법원 관할법원장 귀하

관광사업(카지노업 제외)의 휴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같이 하거나
폐업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신청인	주요업종
1.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각 없이 관광사업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각 없이 관광사업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인) (직인 또는 날인)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본 책상의 제4호는 영리 관광사업에 적용 가능합니다.

신청인	주요업종
1.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각 없이 관광사업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각 없이 관광사업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인) (직인 또는 날인)

변경등록신청서 양식

휴·폐업 신고서 양식

5. 제재 사항

(1) 변경등록

- ☞ 야영장업의 등록 없이 야영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법 제83조 제2항)
- ☞ 야영장업 운영 중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영업양도가 있었음에도 기한 내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휴업·폐업을 하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 등에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명령, 시설·운영의 개선명령대상이 될 수 있고(법 제35조 제1호),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법 제37조)
- ☞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일정한 영업폐쇄조치를 할 수도 있음(법 제36조)

2024

야영장 사업자
안전관리
매뉴얼

3



3차시 캠핑장 관련 법규의 이해2

야영장 시설과 안전·위생 기준

1. 야영장 시설의 종류
2. 안전·위생 기준

안전사고와 법적 책임

1. 민사 책임
2. 형사 책임
3. 행정 제재
4. 책임보험 또는 공제



야영장 시설과 안전·위생 기준

1. 야영장 시설의 종류

» 「관광진흥법」야영장 시설

■ 기본시설, 편의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안전·전기·가스시설 등으로 구분됨(시행규칙 제5조의2, 별표1)

①기본시설 : 야영데크를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② 편의시설 : 야영시설, 야영용 트레일러, 관리실, 방문자 안내소, 매점, 바비큐장, 문화예술체험장, 야외쉼터, 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③ 위생시설 : 취사장, 오물처리장, 화장실, 개수대, 배수시설, 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포함

④ 체육시설 :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 평행봉, 그네, 족구장,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 놀이형시설, 수영장 및 운동장 등

⑤ 안전·전기·가스시설 : 소방시설, 잔불처리시설,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폐쇄회로 레비전설(CCTV), 긴급방송 시설 및 대피소 등 포함

» 편의시설 중 글램핑텐트와 같은 야영시설

-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이동형으로 상시 설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천막은 야영시설로 적용하지 않음
- 야영시설은 시설간 3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복층 구조의 야영시설은 권장되지 않으며, 복층 구조의 경우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재질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영시설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이격거리 3미터 이상 적합



이격거리 3미터 미만 부적합

- 야영시설의 일부 면을 천막이 아닌 목재, 석재, 금속, 합성재 등으로 벽을 구성할 수 없으며, 창호나 샤시로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건축물로 오인될 수 있어서 부적합



주재료가 천막이고,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됨



복층형 야영시설로 이격거리미준수



벽면을 목재로 구성하고 다락방을 설치함



전면부를 목재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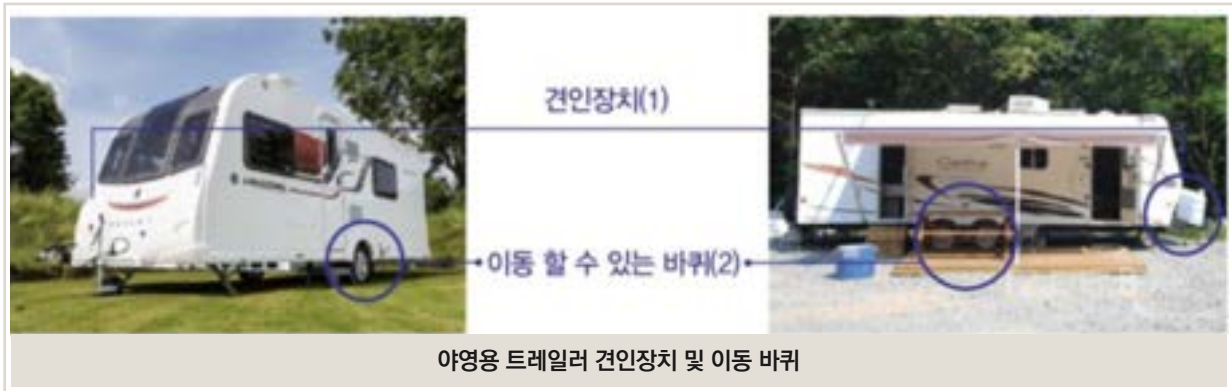
- 천막 등은 화재에 대비해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중인 천막의 방염성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염성능검사(한국소방산기술원, KOTITI, KATRI 등 실시)를 시행하여 하고, 설치시부터 방염처리 업체를 통한 방염처리된 원단을 구입(합격필증/결과통보서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야영시설 내에는 화목 난로나 목재 펠릿 난로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없음



- 야영시설 내 화장실과 샤워실, 개수대 등의 이용자 편의시설을 한 경우 관할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건축물로의 인허가 여부 등 문제를 선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야영용 트레일러

- “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함
⇒ 화재나 홍수에 따른 침수 등의 비상상황 시 견인차량에 의해 즉각적으로 이동조치가 가능해야 하므로 견인장치와 바퀴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견인장치와 바퀴가 있더라도 즉각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형태라면 법에 위반됨



* 원칙적으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등록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하지만, 카라반을 야영장 안에서 야영시설로만 제공하고 도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 야영장시설 중축물에대해서는「건축법」규정을 따라야 함

- 건축법 시행령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야영장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 시설 등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2. 수련시설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안전·위생 기준(「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7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음)

(1) 화재 예방 기준

- »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제9조제1항),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함(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
- »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전기용품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함
 - 다만, 야영장 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제2조제5호 또는 제6호)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 »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함
- »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글램핑, 트레일러 등)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천막 등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함
 - 천막의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각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 해당 시설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야영장 내 숲 및 잔불 처리 시설을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하여야 함

❖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風燈)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함

■ 다만, 야영장 설치지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음



(2) 전기 사용 기준

❖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침수 위험이 없도록 적정 높이에 위치한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함

❖ 옥외용 전선은 야영장비에 손상되지 않도록 굽힐 수 있는 전선관[가요(可撓)전선관]을 이용하여 적정 깊이에 매설하거나, 적정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또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가스 사용 기준

- ❖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은 가스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가스용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품을, 가스용기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함
- ❖ 가스시설은 환기가 잘 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가스배관은 부식방지 처리를 하며,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말단은 막음 처리하여야 함
- ❖ 액화석유가스용기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0 제1호가목2)다)의 기준에 따라 보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 용기는 제외한다)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고, 용기와 그 용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1) 용기집합설비(별표 13 제2호 단서에 따라 중량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자의 시설은 제외한다)를 설치하고, 그 저장 능력이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용기는 옥외에 설치된 용기보관실 안에 설치할 것
- (2) 용기,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는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로부터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이용객이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야영장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함

- 다만, 야영용 자동차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 안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 및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총 저장능력이 1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안전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한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함

(4) 대피 관련 기준

- ❖ 야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긴급방송시설을 갖추거나 앰프의 최대출력이 10와트 이상이면서 가청거리가 250미터 이상인 메가폰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함
- ❖ 야영장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치물이나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게시판의 내용을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함



야영장 배치도 및 비상 연락 체계

- * 이용자가 안전과 관련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기재한 게시판은 쉽게 볼 수 있도록 야영장 입구나 야영장 내 이용객이 많이 접하는 장소(화장실, 개수대, 매점, 관리동 등)에 설치하는 것이 좋음
- * 실제 운영되는 야영장의 경우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많으므로, 내용에 누락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ex. 데크 배치도만 있고, 대피소, 대피로 표시가 없는 경우 등)



야영장 배치도 및 비상 연락 체계

- * 또한, (위 사진과 같이) 설치가 되었더라도 게시판이 나무, 시설물 기타 적재물에 의해서 가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시설, 적재물 등을 이동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 설치된 게시판이 비바람에 오래 노출되어 색이 바래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워진 경우, 또는 최근의 시설 변경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새롭게 게시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기존 게시판의 내용을 수정하는 조치가 필요함

- »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구호설비를 갖추고, 환자 긴급 후송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응급 환자 발생 시 후송대책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 »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여야 하고, 긴급상황 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손전등을 갖추어야 함

(5)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기준

- » 이용자의 야영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야영장과 인접한 곳에 산사태, 홍수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 야영장 지역에 낙석, 붕괴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 추락이나 낙상 우려가 있는 난간에는 추락·낙상 방지 시설과 위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낙상 우려 난간 설치 및 위험 안내표지 설치 사례

- » 집중호우 시에도 야영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배수로 등에는 이용객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 보행 중 야영용 천막 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접한 야영용 천막 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함
- » 야영장이「도로법」제10조 각 호의 도로와 인접할 때에는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야영장과 도로를 격리시켜야 함



안전울타리 설치 사례

- ❖ 야영장 입구를 포함한 야영장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한 사실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함
 - 다만,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요원이 야간순찰을 실시하여야 함
- ❖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 야영장 내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질서유지 및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고 있는 관리요원이 상주하여야 하며, 관리요원은 고지된 각종 주의·금지행위를 행한 이용자에 대하여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 사업자는 사망 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등의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 ❖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시간당 2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야영장 내 서행 안내판 설치 사례

- ❖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ex) 그네, 미끄럼틀,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해야하며,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 안전성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4조, 제17조 등)

- » 인화성·폭발성·유독성 물질은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위험물의 종류 및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6) 위생 기준

- » 야영장에 바닥재를 설치할 때에는 배수가 잘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 »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먹는물관리법」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 » 취사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 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소독하여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이용객에게 유해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 야영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침구(요·이불·베개 등)의 환청과 수건을 햇볕에 말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시로 건조해야 하며, 야영장 이용객이 바뀔 때마다 해당 이용객이 사용한 침구의 환청과 수건을 세탁해야 함



안전사고와 법적 책임

1. 민사 책임

(1) 손해배상책임

»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390조)

- “야영장 이용계약에 따라 사업자는 고객에게 법적 요건을 갖춘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 제758조)

- 야영장 사업자가 고의, 과실의 위법행위로 또는 야영장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고객)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시설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일반적으로 야영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고 있음

(2) 사례

» CASE1〉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7가합57516판결

사실관계

A는 2015. 5. 야영장에서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던 중 캠핑장 진입로 부근에서 발을 헛디뎠다 도로 옆 약 2m아래 개울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경추 5번, 6번 경추 탈구 진단을 받았다.

판결요지

이 사건은 캠핑장 진입로 옆에 깊이가 2m가 넘는 도랑이 있음에도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시설을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위치 부근에 조명시설이 미비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점유하는 공작물인 이 사건 캠핑장 진입로 및 그 부근 시설이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758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되었다.

» CASE2 > 부산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1가단128965판결

사실관계

B는 2011. 9. 캠핑장 내 쇠로 된 사다리 형태의 계단을 통하여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좌측 새끼 손가락이 위 계단 평철과 보호 난간 파이프 사이에 끼인 상태로 추락되어 손가락 절단 상해가 발생하였다.

판결요지

위 사다리 형태의 계단은 경사가 심하였고, 일부에는 보호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사다리의 평철과 보호 난간 파이프 사이의 마감이 양호하지 아니하여 손가락 등이 쉽게 끼일 수 있는 상태였는 바 피고는 캠핑장의 점유, 관리자로서 그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유발되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2. 형사 책임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 형법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야영장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고객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

(2) 사례

» CASE3 > 인천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고단1881, 2015고단3896판결

사실관계

C는 2014. 6.경 원뿔 모양의 인디언텐트(직경 6m, 높이 5m)를 구입하여 야영장 부지 내에 대나무골조를 세우고 외피 및 내피를 골조의 안과 밖에 두르는 방법으로 텐트 6동을 세워 설치하고 고객들에게 위 시설을 제공해 오던 중 2015. 3. 텐트 내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위 텐트가 전소되면서 위 텐트에서 잠을 자던 5명이 사망에 이르고, 위 텐트 내에 있던 1명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과 옆 텐트에서 잠을 자던 1명에게는 일산화탄소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및 왼쪽 손가락의 화상 등을 입었다.



텐트 내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 사례

판결요지

- ① 텐트 재질 및 텐트 내부의 구성물에 있어 내열성·방화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 ② 텐트 내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 ③ 텐트에 가로, 세로 각각 1m 크기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내부 소등 시 식별이 어려운 상태를 방치하였고,
- ④ 텐트 주변에 소화기 등 소화시설을 충분히 비치하고 평소 소화기 상태를 수시 점검함으로써 초기 진화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텐트 주변에 실외 소화기 1대만을 비치하였고 이것도 관리 소홀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러한 업무상과실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주 등이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 받았다.(공동대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등 선고, 1심)

3. 행정 제재

- »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자가 안전, 위생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사업정지, 시설개선명령 등 처분을 할 수 있고(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9의2),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영업소 폐쇄조치가 가능하며(동 법 제36조),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동 법 제37조)

■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2 / 제34조 제1항, 별표3)

	1차	2차	3차	4차
안전위생기준 위반시 제재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 야영장업 안전위생기준 위반시 과징금 : 200만원

4. 책임보험 또는 공제

-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함

⇒ 이에 따라 야영장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상당 부분은 위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지만,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으로 인하여 기타 형사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님



2024

야영장 사업자
안전관리
매뉴얼



4차시 캠핑 용품의 이해

캠핑 용품 분류 및 특징

1. 캠핑 용품 주요 카테고리 분류
2. 카테고리별 용품 종류 및 특징

캠핑 용품 안전 유의사항

1. 텐트
2. 취사용품(스토브, 그릴 등)
3. 캠핑의자 및 테이블
4. 조명 및 랜턴
5. 캠핑 가구



캠핑 용품 분류 및 특징

1. 캠핑 용품 주요 카테고리 분류

❖ 캠핑 용품은 캠핑의 유형과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는 캠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캠핑 스타일과 환경에 적합한 장비 선택이 도움이 됨

■ 카테고리 대분류

- ① 숙박 용품 : 텐트, 침낭, 매트
- ② 취사 용품 : 버너 및 스토브, 쿨러 및 냉장고, 조리도구
- ③ 캠핑 가구 : 의자 및 테이블, 수납가구
- ④ 안전 및 편의용품 : 랜턴 및 조명장비, 응급처치 키트

2. 카테고리별 용품 종류 및 특징

(1) 숙박 용품 : 캠핑 중 숙소를 마련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

❖ 텐트(주요 용품)

■ 돔 텐트(Dome Tent)

구조	둥근 돔 형태의 텐트로 2개 이상의 폴대를 사용해 구조를 지탱함
특징	-설치와 철거가 비교적 쉬어 캠핑 입문자들이 주로 사용함 -바람에 강한 편이며,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까지 다양함



■ 캐빈 텐트(Cabin Tent)

구조	긴 터널형태로, 평행하게 배치된 여러 개의 폴대를 이용해 지지됨
특징	-내부 공간이 넓고 천장이 높아(일어설 수 있는 공간정도) 내부공간감이 있음 -설치가 다소 복잡할 수 있음



■ 터널 텐트(Tunnel Tent)

구조	긴 터널형태로, 평행하게 배치된 여러 개의 폴대를 이용해 지지됨
특징	-내부 공간이 넓고 이너공간과 전실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어 가족형태의 캠퍼들이 선호하며, 거실형 텐트라고도 불림 -넓은 출입구와 창문으로 환기가 잘 됨



■ 팝업 텐트(Pop-Up Tent)

구조	텐트가 자동으로 펼쳐지는 구조로, 펼쳐지지만 하면 설치가 완료되는 형태
특징	-매우 간편하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어 초보 캠퍼가 선호함 -경량이고 휴대가 간편하지만,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 침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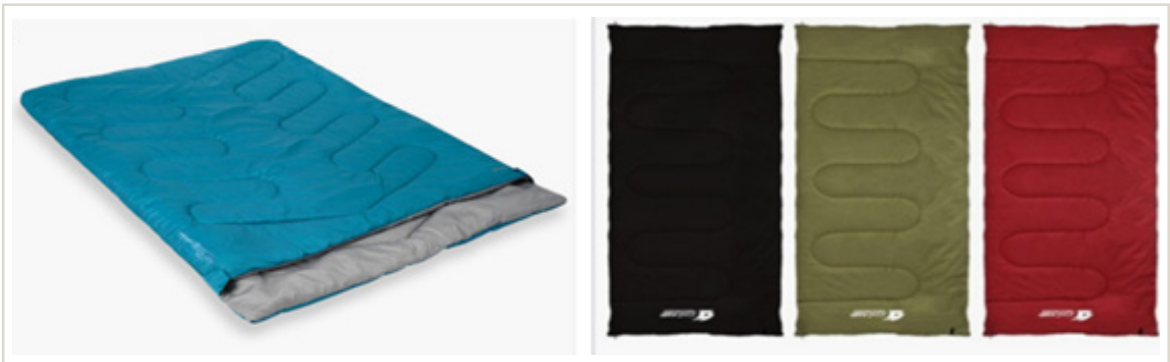
■ 머미형 침낭

구조	사람의 몸 모양을 따라 좁아지는 형태로, 어깨 부분이 넓고 발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디자인 형태
특징	-보온성 : 몸에 밀착되는 디자인으로 열 손실이 적어 매우 따뜻하며, 특히 추운 환경에서 사용하기 매우 좋음 -무게 : 가볍고, 부피가 작아 휴대가 용이함 -단점 : 내부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음



■ 사각형 침낭

구조	직사각형 형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정한 폭을 유지하는 디자인
특징	-공간 : 내부 공간이 넓어 움직이기에 편안함 -다용도성 : 완전히 펼쳐서 이불로도 사용할 수 있음 -단점 : 열 손실이 많아 보온성이 낮으며, 부피가 커서 휴대성이 떨어짐



(2) 취사용품 : 야외에서 음식 준비 및 조리의 필수 장비

» 캠핑버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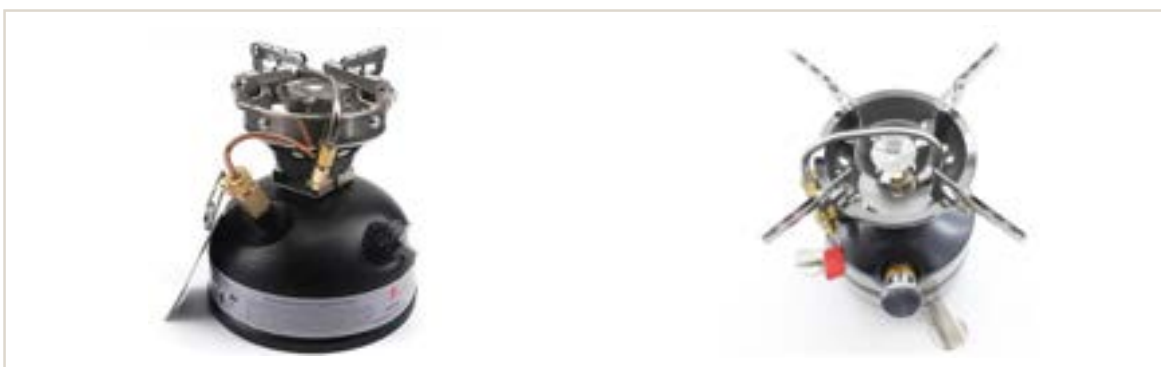
■ 가스버너

특징	휴대용 가스 카트리지를 사용해 간편하게 불을 붙일 수 있고 화력 조절이 쉬워 다양한 요리에 적합함
장점	설치와 사용이 간편하며,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휴대성이 좋음
단점	가스 카트리지의 연료가 소진되면 사용이 불가능하며, 추운 환경에서 화력이 떨어질 수 있음



■ 액체 연료 스토브

특징	화이트 가솔린, 등유 등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스토브로, 안정적인 화력을 제공함
장점	추운 날씨에서도 일정한 화력을 유지할 수 있음
단점	사용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음



» 캠핑그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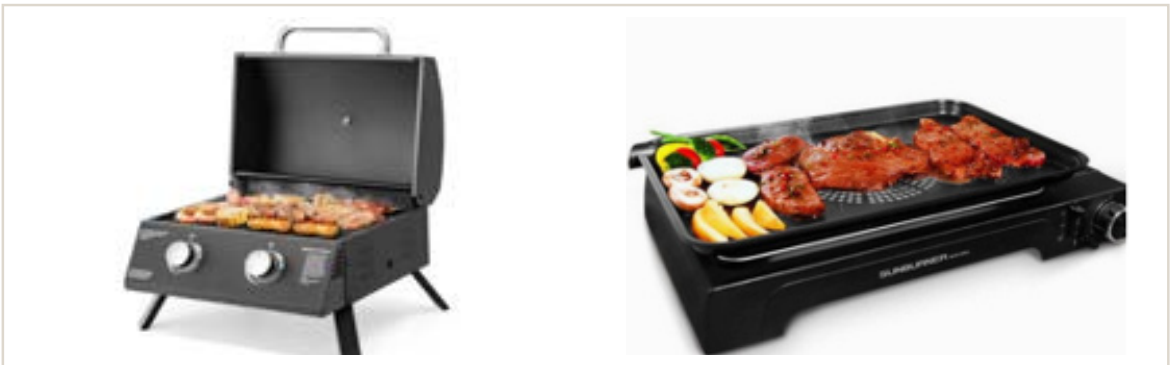
■ 숯불그릴

특징	숯을 연료로 사용해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그릴로 숯에서 나오는 특유의 향이 음식에 베어 캠핑의 매력을 더함
장점	고기의 훈연 향을 더할 수 있어 요리에 적합함
단점	숯을 준비하고 불을 붙이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으며, 화력조절이 어려움



■ 가스그릴

특징	가스 카트리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그릴로 간편하게 불을 붙이고 화력을 조절할 수 있음
장점	숯불그릴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연기가 적음
단점	숯불그릴만큼의 향을 내기는 어렵고, 연료를 필요로 함



» 쿨러 및 냉장고

■ 아이스 쿨러

특징	얼음을 넣어 음식과 음료를 냉각하는 휴대용 보관 용기
장점	전기가 필요 없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크기로 휴대성이 좋음
단점	얼음이 녹으면 냉각 효과가 줄어들며, 장기간 보관에는 한계가 있음



■ 캠핑용 전기 냉장고

특징	차량 전원이나 배터리로 작동하는 소형 냉장고로 온도 조절이 가능해 신선한 상태로 음식을 보관할 수 있음
장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장기 캠핑에 유리함
단점	전원이 필요하며, 무겁고 부피가 커서 휴대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3) 캠핑 가구 : 편안함과 기능성 제공에 목적이 있으며, 캠핑의 환경에 맞춰 디자인된 가구들은 휴대성과 내구성의 고객 취향에 맞게 선택하게 됨

» 의자

- 접이식 의자
 - 가볍고 쉽게 접을 수 있어 이동과 보관이 간편함
 - 기본적인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으며, 캠핑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됨
- 로우 체어
 - 낮은 좌석을 높이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
 - 지면에 가까운 위치에서 캠프파이어를 즐길 때 좋음
- 롱 체어
 - 긴 의자 형태로,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쉴 수 있음
 -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에 적합함



» 테이블

- 접이식 캠핑 테이블
 - 설치와 해체가 간편함
 - 다양한 크기와 높이가 있으며, 야외에서 식사나 조리할 때 유용함
- 다목적 테이블
 - 조절 가능한 높이와 접이식 다리를 갖춘 테이블
 - 캠핑 뿐만 아니라 피크닉, 야외 활동에도 적합함



» 수납

■ 스토리지 박스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박스로, 휴대 및 이동에 용이함

■ 캐비닛

-여러 개의 수납공간을 갖춘 소형 가구로, 음식 재료나 조리도구 정리에 적합함



스토리지 박스



캐비닛

(4) 안전 및 편의용품 : 캠핑 환경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 응급처치 키트

■ 캠핑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상처나 부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용품은 상시 준비를 요구함

» 화재 안전 용품

■ 일산화 탄소 경보기 : 동계 난로 작동 시 화재 감지 및 예방을 위해 경고하는 안전장치

» 비상 조명 및 랜턴

■ LED 랜턴 : 높은 밝기와 배터리 수명을 제공하는 랜턴으로, 텐트 내/외부 조명에 적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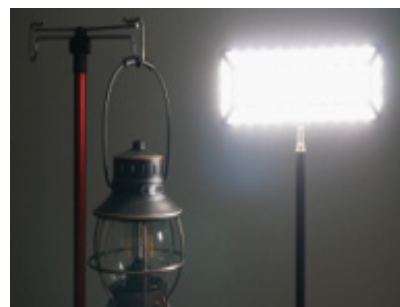
■ 휴대용 전등 : 배터리나 충전식으로 운영되는 전등으로, 텐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응급처치 키트



화재 안전 용품



비상 조명 및 랜턴

캠핑 용품 안전 유의사항

1. 텐트

(1) 설치 유의사항

» 지면 선택

- 평평하고 배수 좋은 곳에 텐트를 설치하여 물 빠짐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

» 기상 조건

- 바람이 강할 때는 텐트 설치를 지양하고, 바람을 막아주는 경량텐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 고정

- 팩과 로프를 확실히 고정하여 바람에 의해 텐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함

(2) 사용 유의사항

» 화기 주의

- 텐트 내부에서는 절대 캠프파이어를 하지 않아야 함

» 통풍

- 충분한 통풍을 위해 환기구를 열어 두어 내부의 습기와 열을 방출하도록 함

2. 취사용품(스토브, 그릴 등)

(1) 설치 및 사용 유의사항

» 화기 안전

- 인화성 물질(기름, 가스) 주변에서는 사용하지 말고, 사용 후에는 불이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환기

- 연료를 사용하는 취사용품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동계 캠핑 시 텐트 내 일산화탄소 중독을 방지할 수 있음

» 화재 예방

- 취사용품 사용 후 잔열을 확인하고, 불이 꺼졌는지도 확인 후 사용을 중지해야 함

(2) 보관 유의사항

» 연료 보관

- 연료 보관 시 직사광선이나 열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도록 해야 함

3. 캠핑의자 및 테이블

(1) 사용 유의사항

» 하중 확인

- 최대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 시 의자나 테이블이 불안정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함

» 바닥 상태

- 의자/테이블 설치 시, 평평한 바닥에 놓아 안정성을 유지해야 함

(2) 보관 유의사항

» 청소 및 관리

- 사용 후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후 보관하여 부패나 손상을 방지해야 함

» 통풍

- 충분한 통풍을 위해 환기구를 열어 두어 내부의 습기와 열을 방출하도록 함

4. 조명 및 랜턴

(1) 사용 유의사항

» 전원 관리

- 배터리나 연료가 부족할 때는 미리 교체하거나 보충하고, 과열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안전한 위치

- 인화성 물질을 근처에 두지 말고, 적절한 거리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함

5. 캠핑 가구

(1) 설치 및 사용 유의사항

» 지지력 확인

- 캠핑 가구의 지지력과 하중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 주변 확인

- 설치 시 주변 환경을 확인하여, 넘어지거나 부딪힐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2024
야영장 사업자
안전관리
매뉴얼

5



5차시

캠핑의 안전관리

캠핑장 전기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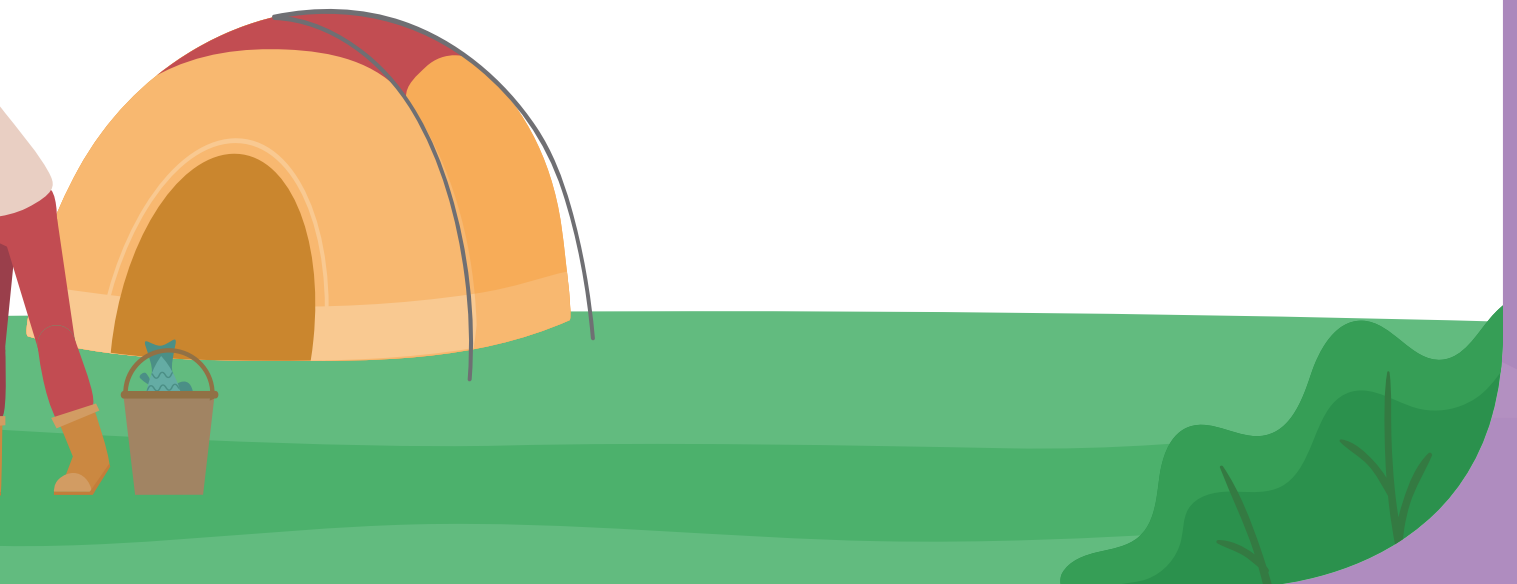
1. 전기와 전기안전
2. 전기로 인한 화재 사례와 예방법

캠핑장 가스안전

1. 가스와가스안전
2. 가스로 인한 화재 사례와 예방법
3. 화재 예방요령

재난재해 유형별 대응

1. 재난재해 피해 사례



캠핑장 전기안전

1. 전기와 전기안전

» 전기 화재 발생 시 대처 방안

- 전기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됨(물은 전도체이기 때문)
- 가장 우선적으로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일반화재 혹은 유류화재로 전환 후 진화
- 전기 공급 차단이 불확실한 경우, 소화기 등 산소를 차단하는 화학 약품을 뿌림
(가벼운 전기화재인 경우에만 통하는 수단)
- 아크 방전에 의한 화재는 전원을 차단하기 전까지 손쓸 도리가 없음

(1) 전기화재의 원인과 방지대책

» 절연열화

- 전선의 피복이 경년변화에 따라 탄화되어 누전으로 발생하는 화재(트래킹 현상)
- 전기 작업 시 주의해야 함

» 과전류

- 전압이나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
- 열의 발생과 방출 간의 균형이 깨져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열적 경과에 의한 발화

- 열 발생 전기 기기를 가연물 주변에서 사용하거나 열이 효과적으로 방산되지 않는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가연물 주위에서 열이 축적되어 발화하는 현상

» 접촉불량

- 전선과 기기 간의 느슨한 접촉 상태로 전기 저항 증가 및 발열(아산화동 발열 현상)
- 예) 2016년 프랑스 테슬라 세단 타입 전기 자동차 화재

» 단락

- 전선의 두 부분이 저항이 거의 없거나 없는 상태에서 접촉하는 현상
- 가전제품은 자체적으로 저항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허용 용량 이상의 전류가 전선을 흐르지 못하도록 설계됨
- 전선 단락이 발생하면 이러한 안전장치를 우회하고 허용 용량을 초과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어 전선이 녹거나 폭발하며 주변 물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함
-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

2. 전기로 인한 화재 사례와 예방법

(1)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건

» 사고 개요

- 2015년 3월 인천시 강화도 화도면동막 해수욕장에서 500m 떨어진 캠핑장
- 화재로 3분 만에 텐트가 전소되어 자녀와 캠핑을 온 두 가족 6명 5명이 사망, 2명 중화상
- 텐트 안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패널에서 발화해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인디언 텐트에 불이 옮겨 화재 발생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건

(2) 연천군 캠핑장 화재 사건

» 사고 개요

- 2024년 6월 연천군 캠핑장에서 전기레인지 사용 부주의에 의한 화재
- 캠핑시설 내 카라반을 이용중인 투숙객이 전기레인지(하이라이트) 위에 의류와 물티슈 등을 올려놓고 외출 시 화재 발생
- 근처 투숙객이 불꽃과 연기가 나는 것을 바로 목격하고 119에 신고 및 소화기로 자체진화
- 전기레인지와 후드망 각 1개씩, 주방 싱크대 일부 부분소실, 인명피해 없음

» 사고 원인 및 문제점

■ 사고원인

- 소방 점검 등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미신고 시설
- 화재 시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 미작동
- 소화기 등 소화시설 비치 미흡과 소홀한 관리의무

■ 전기적 위험요인

- 냉장고, TV, 발열매트 등 각종 전기제품과 뒤엉킨 멀티탭과 전선
- 화재에 취약한 텐트내부에 과도한 전기기기 및 전열기 설치
-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전기제품 시공 및 설치

■ 캠핑장 텐트 위험요인

- 불이 났을 때 탈출하기 어려운 텐트 구조
- 6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의 단 하나뿐인 출입문
- 1m 남짓한 높이의 출입문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말아 올려야 하는 형태
- 취침 전 출입문을 내리고 조명을 끄면 문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운 구조
- 텐트에 다량의 가연성 집기(매트리스, 바닥재, 쇼파 등) 비치로 유독가스 발생

■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사용 시 유의사항

- 발열체인 니크롬선에 전기를 통하게 해 상판을 직접 가열하는 방식
- 전원을 꺼도 잔열이 오래 남아 위에 물건을 올려 놓으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
- 전원 버튼이 터치식으로 쉽게 눌리는 형태로 캠핑장에 동반한 애완동물에 의해 버튼이 눌러져 화재가 발생하기도 함

(3) 화재사고 예방 수칙

» 전기레인지에 의한 화재 예방법

- 전선이 손상이나 과열의 징후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 사용 후에는 전기레인지가 식을 때까지 보호 커버를 덮음
- 기기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기름이나 음식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함
-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를 주방 근처에 배치함

» 캠핑용 배터리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 수칙

- 적절한 온도 유지
 - 화재 시 배터리는 20℃에서 25℃ 사이의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음
 - 직사광선이 닿는 곳이나 고온 환경에두지 말아야 함
 - 겨울철에 너무 낮은 온도에서 배터리를 방치하지 않음
- 충전 상태 유지
 - 직사광선이 배터리를 40%에서 60% 정도 충전된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음
 - 완전히 충전하거나 완전히 방전된 상태로 보관하면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수 있음
 - 과충전은 폭발에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충전 후 뽑아 보관해야 함

■ 안전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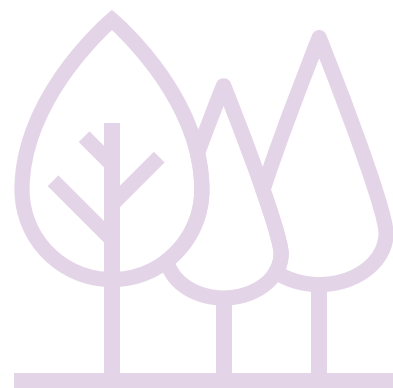
- 배터리는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함
- 금속 상자나 방화 금고 같은 불연성 재료의 보관함에 넣어두는 것이 안전함
- 습기를 피해 보관하는 것이 좋음

■ 물리적 손상 방지

- 배터리를 떨어뜨리거나 찌그러뜨리지 않도록 주의함
- 물리적 손상은 내부 단락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의 위험성이 있음
- 배터리 단자가 금속 물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테이프로 감싸거나 개별 포장함

■ 정기적인 점검

- 장기간 보관 중에도 배터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함
- 오래된 배터리는 안전을 위해 교체해 주는 것이 좋으며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함
-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는 배터리 전용 폐기함에 넣어야 안전함
- 일반 쓰레기가 아닌 배터리 회수 서비스나 전용 폐기함에 폐기함



캠핑장 가스안전

1. 가스와 가스안전

» 가스 사용으로 인한 화재

- 캠핑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
- 취사를 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유형이 많음

2. 가스로 인한 화재 사례와 예방법

» 가스 화재 사례 통계



- 최근 5년간, 캠핑 시 가스 사고 사상자 20명 발생
- 2019년~2023년 야영지와 캠핑장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총 11건 (6명 사망, 16명 부상)

(1) 가스 화재 사례

» 사고 개요

- 2021년 10월 충남 태안군 원북면의 한 오토캠핑장에서 부탄가스 폭발 화재 발생
- 텐트 안에 30대 여성과 아들 2명이 대피하다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음
- 인근에 있던 야영객이 소화기를 이용해 진압하여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음

(2) 가스 화재 원인과 예방법

» 가스 화재 원인

- 실내에 용기 보관으로 가스 누설. 점화 미확인에 의한 누설로 인한 폭발
- 가스 사용 중 장기간 자리를 이탈하여 발생하는 폭발
- 성냥불로 누설 확인 중에 폭발
- 호스 접속불량 방치
- 조정기 분해로 인한 오조작, 코크 조작 미숙

» 가스 화재 원인의 예방대책

■ 사용 전

- 가스 불을 켜기 전에 새는 곳이 없는지 냄새를 맡아 확인함
- 가스 연소 시에는 많은 공기가 필요하므로 창문을 열어 실내를 충분히 환기함
- 가스레인지 주위에는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함

■ 사용 중

- 점화용 손잡이를 천천히 돌려 점화시키고 불이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함
- 사용 중에는 자리를 뜨지 않음
- 가스연소 시에는 파란 불꽃이 되도록 공기조절기를 조절하여 사용함

■ 사용 후

- 가스 불을 켜기 전에 새는 곳이 없는지 코크와 중간밸브를 반드시 잠금
- 장기간 사무실 등을 비울 때에는 용기밸브나 메인밸브까지 잠금
- 가스용기는 자주 이동하지 말고 한 곳에 고정하여 사용함

■ 평상 시

- 연소 시 버너노즐이 막히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청소함
- 호스와 이음새 부분에서 혹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이나 점검액 등으로 수시 누설여부를 확인함
- LPG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함
- 휴대용 가스레인을 사용할 경우, 그릇의 바닥이 삼발이보다 넓은 것을 사용하지 않음
- 다 쓰고 난 캔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 잔류가스를 제거하고 버림
-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는 가스 누설을 발견한 즉시 코크와 중간밸브, 용기밸브까지 잠그고 주변의 불씨를 없애고 전기기구들은 조작하지 않음

» 휴대용 부탄가스 사고 원인

■ 부탄가스

- 비점이 약 -0.5도 영상의 온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가장 구하기 쉽고 저렴하며 화력도 좋아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스
- 열에 약해 더운 여름에 폭발 가능성이 높아 사용 및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비점이 -0.5도 영하의 날씨에서는 연소가 안됨
- 겨울철에는 영하로 내려가면 연소가 잘되지 않아 가스 용기의 온도를 올려줘야 함
- 화기 근처에 두는 건 폭발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함

■ 프로판 가스

- 비점이 -40도로 영하권과 사계절에 사용 가능함
- 유전에서 석유와 함께 나오는 프로판(C_3H_8)과 부탄(C_4H_{10})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상온에서 압축하여 액체로 만든 연료
- 증기압이 부탄가스 대비 4배 이상으로 가스를 담는 용기가 튼튼해야 함 (무겁고 큰 별도 특수 용기에 저장함)
- 용기 사용 기간이 있어 정기적으로 가스 용기의 안전점검을 해야 함
- 사용후에는 가스 충전 설비가 갖추어진 충전소에서 매번 충전을 해야함

■ 이소부탄가스

- 비점이 약 -10도 ~ -17도로 우리나라 사계절에 사용 가능함
- 국내이소부탄가스 제품들은 대부분 프로판가스 또는 부탄가스가 혼합되어 있음
- 보다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용기의 형태가 부탄가스통과는 조금 다른 반원 형상
- 겨울에도 점화가 원활하여 국내 동계시즌에 사용함

» 휴대용 부탄가스 사고 예방법

■ 가스 토치

- 부탄캔에토치를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 부탄캔 가이드 홈에 맞게 연결해야 함
- 연결 후에 꼭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함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검증을 받은 가스용기를 사용함

■ 부탄캔 폐기

- 다 쓴 부탄가스에도 잔여가스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이미 다 사용한 부탄가스 캔은 서늘한 곳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구멍을 내어 가스를 다 뺀 후 버림
- 부탄가스는 가스레인지나 전기히터와 같이 강한 열을 내뿜는 물체와 가까이 두면 안됨

■ 텐트 내 가스 사용 금지

-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화기 사용을 절대 금지해야 함
- 밀폐된 공간에서 버너와 가스랜턴을 사용할 경우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가스 누출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음
- 텐트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과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를 이용한 화기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텐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용함
- 가스 중독의 증상으로는 초기에 두통과 어지럼증 등 다른 질환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증상이 발견되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혼수나 발작, 호흡마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부탄캔을 직접 가열하거나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화기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곳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함

■ 과대 조리기구 사용금지

- 인원 수가 많을 때는 많은 불판을 사용하면서 가스버너 폭발로 이어질 수 있음
- 여러대의 버너를 사용할 때는 서로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 사용함

■ 소화기 비치

- 가스 화재는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사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항상 소화기를 텐트 가까운 곳에 비치함

■ 모래, 흙

- 화재가 발생하고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압에 성공했음지라도 주변의 모래 또는 흙을 이용하여 불씨를 완전히 꺼야 함

3. 화재 예방요령

» 일반화재

- 모닥불은 지정된 장소 및 인근에 가연물이 없는 장소에서 피울 수 있도록 함
- 모닥불 인근에 소화기, 방화수, 방화사(모래, 흙)를 비치하여 화재에 대비함
- 모닥불 주변에서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관리함
- 담배는 지정된 장소(흡연구역)에서 피울 수 있도록 하고 궂초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림
- 흡연구역에는 소화기 또는 방화수 등을 비치함

» 전기화재

-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노후배선에서 선이 벗겨져 합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에 주의해야 함
- 과전류 발생시에는 전기를 차단하는 퓨즈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전기 담요 등은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면 위험하며 전선 등을 말아서 사용하지 않음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전기기구 구입시 <전>,<검>,<KS>표시를 확인하고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함
- 전선이 식물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함

» 가스화재

- 사용 전에는 가스불을 켜기 전에 새는 곳이 없는지 냄새로 확인함
- 장시간 외출 후에는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킴
-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함
- 사용 중에는 점화코크를 돌려 점화시키고 불이 붙었는지 확인함
- 요리 중에는 자리를 뜨지 않음
- 연소시에는 파란불꽃이 되도록 공기조절기를 조절함
- 가스레인지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점화코크와 중간밸브를 잠그고 장기간 외출 시에는 용기밸브, 메인밸브를 잠금

» 유류화재

- 유류저장소는 환기가 잘되도록 하고 가솔린 등 인화물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함
- 급유시에는 실외에서 하도록 하고 급유 중에 흘린 기름은 닦아내고 난로 주변에는 소화기나 모래 등을 미리 준비함
- 고기를 굽거나 요리 시에는 가열된 기름에 주의하고 요리 도중 자리를 비우지 않음
- 석유난로는 연소상태에서 이동하거나 주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 도중 넘어지지 않아야 함

»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사람들에게 알림
-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함
- 노약자와 어린이가 긴급 대피 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피유도를 함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신속한 초기진화를 실시함
- 불길 속을 통과할 때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몸과 얼굴을 감쌘
-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
- 불이 났다면 신속하게 텐트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화재가 확산되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함
- 텐트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물 조리 등 텐트 내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텐트를 찢고 나올 수 있도록 항상 날카로운 도구를 준비함
- 탈출 후에도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소화기나 방화수의 위치를 확인함

재난재해 유형별 대응

1. 재난재해 피해 사례

» 오천솔밭 캠핑장 사고

- 2014년 8월, 경북 영덕군 오천솔밭 내 캠핑장
-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최대 풍속 10m/s의 강풍이 몰아쳐 텐트 옆 지름 70cm 소나무가 부러져 텐트를 덮침
- 7세 남아 두개골 골절로 사망, 2명 부상

» 자연재난 유형별 대응 요령

■ 태풍/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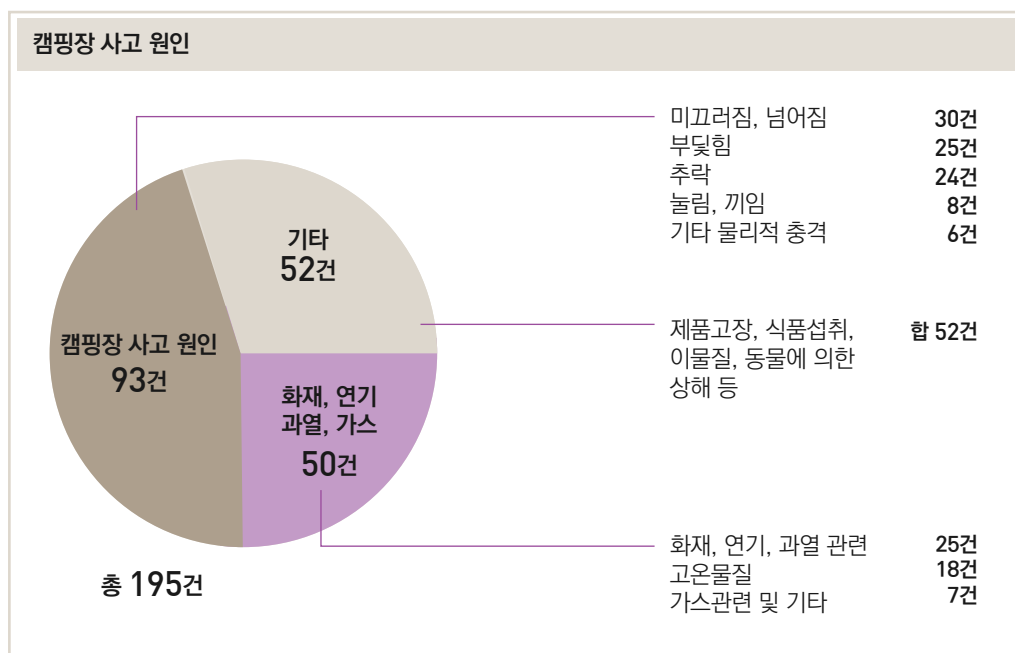
- 태풍이나 폭우를 건디는 텐트와 타프는 없으므로 안전을 위해 철수하거나 캠핑장의 관리동으로 신속히 대피함
- 텐트의 폴대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는 카본(탄소) 소재는 전도율이 높은 금속으로서 번개(낙뢰)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낙뢰가 있는 날에는 다른 건물 내부로 대피함

■ 태풍/호우 예보 시

-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기상상황 및 태풍이나 호우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파악함
- 산간, 계곡, 하천 등에서 야영, 물놀이 중이라면 물놀이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함
-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공간이나 붕괴우려가 있는 곳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함

■ 태풍/호우 주의보 및 경보 시

- 캠핑장이 해안지역일 경우에는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은 대피 준비를 함
- 가로등과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하며 해안도로에서의 운전도 삼가함
- 천둥이나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신속히 대피함
- 캠핑장이 산악 지역일 경우에는 산사태 발생 가능 지역은 대피를 준비해야 하고 기상정보와 강우상황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물리적 충격에 의한 안전사고

- 2011. 9월 경북 청도군 내의 사설 캠핑장에서 초등학생이 쇠로 된 사다리 형태의 계단을 통해 내려가다 미끄러져 좌측 5수지가 위 계단 편철과 보호 난간 파이프 사이에 끼인 상태로 추락한 상해사고가 발생함
- 캠핑장에서 이동할 때 텐트 등을 고정한 줄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거나 밤에는 줄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함
- 야광으로 된 줄이나 끝막이(스토퍼)로 줄을 고정시키는 것이 좋음
-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2024
야영장 사업자
안전관리
매뉴얼

6



6차시 캠핑장 응급처치 실무

야영장 응급처치

1. 응급처치의 목적
2. 응급처치의 개념
3. 응급처치 시 알아야 할 법적 문제
4. 응급처치의 원칙

상황별 응급처치

1. 심폐소생술
2. 인공호흡
3. 기도폐쇄
4. 골절
5. 화상
6. 출혈 및 비출혈
7. 감전
8. 가스중독
9. 열사병, 일사병

야영장 응급처치

1. 응급처치의 목적

- » 응급환자의 생명구조
- » 통증 감소 및 악화 방지
- » 가치 있는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회복을 도움
- » 장애의 정도 경감

2. 응급처치의 개념

갑자기 발생한 외상이나 질환(응급외상, 응급질환)에 대해서
주로 발생한 장소, 또는 반송된 의료기관에서 최소한도의 치료를 행하는 것

3. 응급처치 시 알아야 할 법적 문제

» 법 제5조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함
-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상기 법률의 행위자에는 일반인 및 업무시간 외의 응급의료종사자를 포함함

4. 응급처치의 원칙

» ABC원칙

- A(Airway): 기도 확보
- B(Breathing): 호흡
- C(Circulation): 순환

상황별 응급처치

1. 심폐소생술

» 개념

- 심폐소생술(心肺蘇生術,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 심폐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 환자의 심장 및 폐가 혈류를 순환시키고 호흡을 하는 기능을 못할 때, 타인이 인위적으로 심장과 폐에 압박을 주어 혈류와 호흡을 순환시키는 것
- 혈류 및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5분 이내로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함
- 심폐소생술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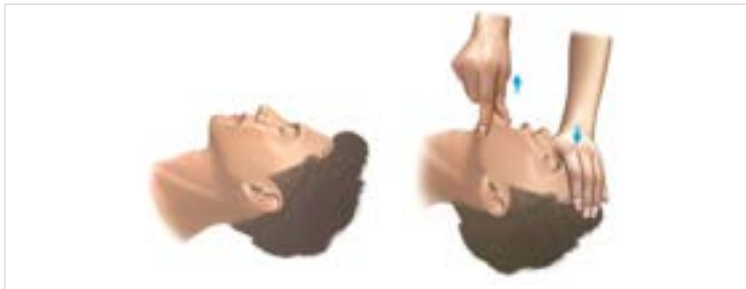
» 과정

- 반응확인
 -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봄
 -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신음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냄
 -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함
- 119 신고 요청
 -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함
 -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 일반인은 비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급 의료 전화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가슴압박
 -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에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각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댐
 -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함
 - 가슴 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소아 4~5 cm)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함
 - '하나', '둘', '셋', ..., '서른'하고 세어가면서 규칙적으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함
 - 119가 올때까지 가슴압박을 함

2. 인공호흡

» 방법

- 인공호흡은 일반인은 의무는 아니지만, 물에 빠진 재해자를 구조하고 나서는 인공호흡을 함
- 인공호흡과 가슴압박을 자신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자는 ‘머리기울이고 턱들어올리기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함
- 한 손을 환자의 이마에 대고 손바닥으로 압력을 가하여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하면서,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아래턱의 뼈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받쳐주어 머리를 뒤로 기울임
- 턱 아래 부위의 연부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음
-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과 입 호흡을 준비함
- 1초에 걸쳐 인공호흡을 함
-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 될 정도의 일회 호흡량으로 호흡함
- 가슴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함
-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여 과환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함



3. 기도폐쇄

» 기도폐쇄 확인 방법

- 실신, 경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청색증, 심장정지 또는 의식 소실을 유발할 수 있는 응급상황들과 기도폐쇄를 구별해 내는 것은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에 중요함
- 이물질은 가벼운 또는 심각한 상태의 기도폐쇄를 일으킬 수 있음
-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환자에게 기도폐쇄 소견이 보이면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함
- 환자가 기침, 청색증, 말하거나 숨쉬기 힘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거나 자신의 목을 움켜잡는 징후를 보이면 환자에게 “목에 뭐가 걸렸나요?”라고 물어보아, 환자가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인다면 심각한 상태의 기도폐쇄로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처치를 해야 함

» 기도폐쇄 치료 방법

- 환자가 가벼운 기도폐쇄 증상을 보이면서 기침을 크게 하고 있다면, 환자의 자발적인 기침과 숨을 쉬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
- 심각한 기도폐쇄의 징후를 보이며 효과적으로 기침을 하지 못하는 성인이나 1세 이상의 소아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등 두드리기(Back blow)를 시행함

- 등 두드리기를 5회 연속 시행한 후에도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Abdominal thrust, 하임리히법)를 시행함
- 기도폐쇄의 징후가 해소되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계속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5회씩 반복함
- 1세 미만의 영아는 복강 내 장기손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복부 압박이 권고되지 않음
- 성인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구조자는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함
- 임신부나 고도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등 두드리기를 시행한 후 이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복부 밀어내기 대신 가슴 밀어내기(Chest thrust)를 시행함



4. 골절

» 응급처치 방법

- 골절 부위가 변형됐거나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온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고정시킨 다음 구조요원을 부르고 구조요원이 올때까지 움직이지 않음
- 병원으로 구조자들이 업고 이동을 하는 것은 상처부위에 더 충격을 줄 수 있음
- 담요나 베개를 이용해서 심장보다 높여주는 것이 좋음
- 단순히 빈 경우에는 다친 부위를 탄력붕대로 넓게 감싸고 움직임을 줄임
-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얼음찜질을 함

5. 화상

» 응급처치 방법

- 흐르는 찬물로 최소한 20분 이상 열을 식힘
- 심하지 않을 때는 상처 부위의 옷을 가위로 자르고 열을 식힘
- 시계, 팔찌, 반지는 빼야 함
- 상처 부위는 절대 문지르면 안 되며, 물집도 터뜨리지 말아야 함
- 상처가 심할 때는 소독 거즈로 감싼 후 호흡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김
-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음
- 화상이 심하고 상처 부위가 넓은 경우 전문치료가 필요함

6. 출혈 및 비출혈

» 칼에 손가락이 잘린 경우

- 잘린 손가락은 다시 접합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적절히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함
- 상처부위를 눌러 피를 멎게 하고 손을 심장보다 높이 둠
- 잘린 손가락은 거즈로 잘 싸서 얼음이 담긴 비닐봉지에 넣어 병원으로 신속히 운반함
- 잘린 부위는 손을 대지 않음

» 코피가 나는 경우

- 머리를 앞으로 숙여 숨을 쉬면서 코뼈 밑 부분을 잡음
- 말을 하거나 침을 삼키거나 기침을 해서는 안 됨
- 10분 정도 지난 뒤에도 피가 멈추지 않으면 곧바로 병원으로 가야 함
- 코피가 멎은 후에도 한동안 머리를 앞으로 굽히고 미지근한 물로 코와 입 주위를 닦으며 물리적 자극을 피함

» 내부출혈을 하는 환자

- 내부출혈 환자 소견
 - 손상기전 : 흉부나 복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손상기전
 - 흉부 및 복부 증상 : 흉통, 복통
 - 흉부 및 복부 징후 : 흉벽이나 복벽에 심한 충격력을 시사하는 타박상이나 찰과상, 또는 관통상, 복부 압통, 복부 팽만
- 쇼크 징후
 - 의식저하 : 헛소리, 반항, 착란 상태, 불안증, 안절부절 못함 등
 - 창백하고 차가우면서 축축한 피부 : 만져보면 끈끈하고 축축하게 느껴짐
 - 가늘고 약한 맥박 : 손목이나 팔꿈치에서 맥박이 가늘고 약하게 만져짐
 - 빠른호흡 : 숨이 찬 듯 빠르고 혈떡이듯이 숨을 쉼
 - 점막탈수 : 갈증을 많이 호소하며 입안 점막이 말라 있음
 - 출혈 : 손상 후 토혈, 혈변, 혈뇨

» 넘어지거나 베이거나 끼여서 출혈이 나는 경우

- 출혈이 심하면 즉시 상처부위를 지혈하고 출혈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해야 함
- 상처가 크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될 수도 있어 부상자에게 물을 주어서는 안 됨
- 상처부위를 직접 압박함
- 직접 압박으로도 지혈되지 않을 때는 출혈 부위에서 몸통 방향으로 가까이 위치한 동맥 부위를 압박하는 동맥점 압박을 해야 함
- 팔에서 피가 나면 위팔동맥(상완동맥)을 눌러 피를 멈추게 할 수 있고 다리에서 나는 피는 사타구니 동맥을 눌러 멈추게 함
- 출혈 부위보다 근위(부)에 지혈대를 감아서 출혈을 멈추게 함 (신경이나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팔이나 다리에 괴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후 수단)
- 출혈은 쇼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처치를 해줘야 함

7. 감전

» 응급처치 방법

- 즉시 전원을 끊음
- 전원을 끌 수 없는 곳이라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옷차림을 갖추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건을 이용해 감전을 일으킨 물건을 환자에게서 떼어내야 함
- 구조 후엔 환자에게 의식이 있는지 살피고, 의식이 없으면 호흡과 맥박을 확인함
- 호흡이 멎었을 때는 인공호흡, 맥박이 멎었다면 인공호흡과 함께 심장 마사지를 함
- 감전은 몸의 내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의식이 있더라도 즉시 응급실로 옮겨야 함

8. 가스중독

» 사례

- 2019년 금산군에서는 술을 마신뒤 추위를 피해 불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 바베큐용으로 사용한 갈탄을 난방용으로 다시 사용 시 밀폐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가스 중독을 일으킴 (대뇌중추신경이 마비되고 질식되어 생명을 잃게 될 수 있음)

» 응급처치 방법

- 산소마스크와 호흡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준비하여 환자를 신속히 옮김
- 구비가 안되어 있는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환자를 옮기고 산소공급을 도와주고 바로 119에 신고함
- 119가 올 때까지 환자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고 의식이 돌아오면 따뜻한 차나 커피를 주어 혈액순환을 도움
- 가스누출 현장을 신경 쓸 여력이 되면 원인을 차단하고 환기를 시키며, 프로판 가스의 경우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쓸어내는 식으로 가스를 빼냄(폭발 위험 주의)

9. 열사병, 일사병

» 개념

- 일사병: 머리나 목 부분에 직사광선을 받아 생기는 병
- 열사병: 체내의 열을 체외로 내보내지 못할 때 생기는 병

» 응급처치 방법

- 환자를 서늘하고 그늘진 곳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함
- 옷을 벗기고, 젖은 수건이나 시트로 환자를 덮은 다음 부채나 선풍기로 바람을 쏘여 주면서 병원으로 신속히 옮김
- 너무 더운날에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며 몸 관리를 해야 함

2024
야영장 사업자
안전관리
매뉴얼

7



7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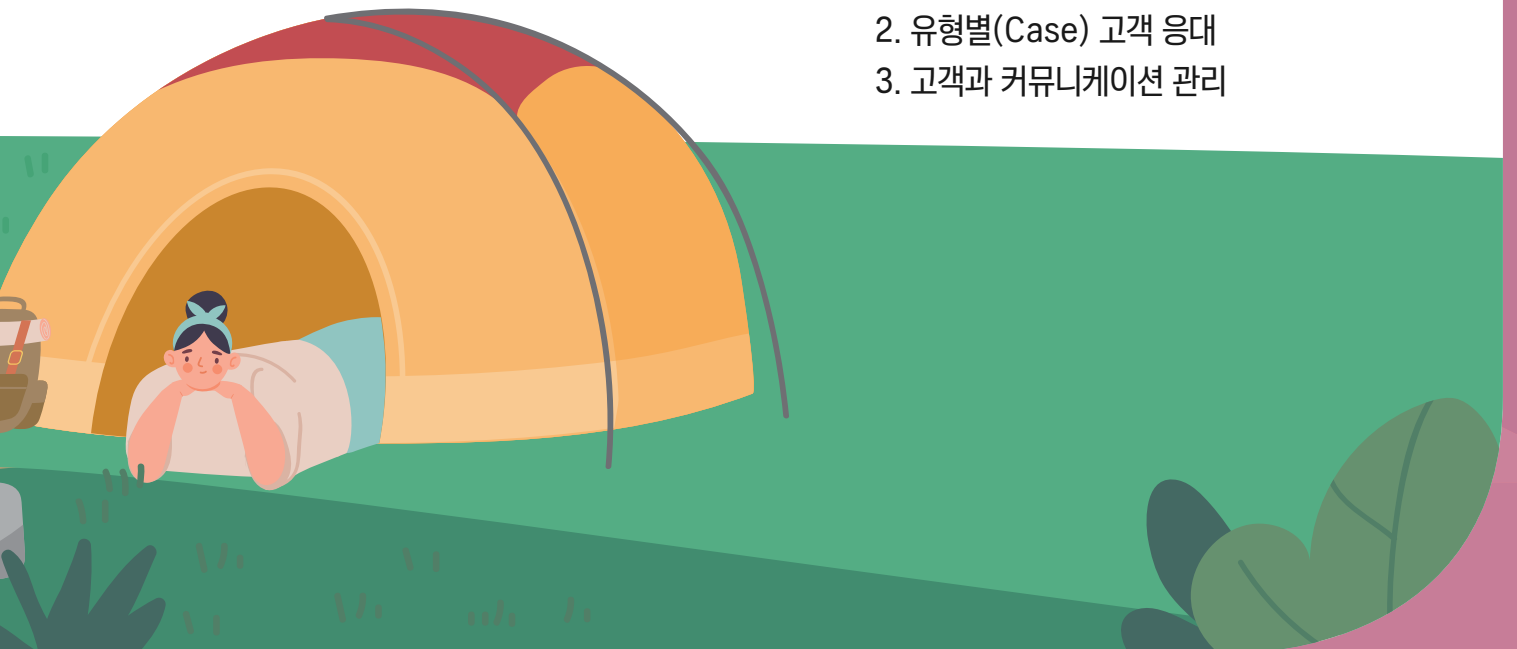
캠핑장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서비스 마인드

캠핑 고객에 대한 이해와 사업자 마인드 셋

1. 캠핑 인원 및 동반 유형별 고객 니즈 및 서비스 고려요소
2. 숙박 유형별 고객 니즈 및 서비스 고려요소
3. 고객의 정보 습득 이용환경
4. 사업자 마인드셋

캠핑장 사업자가 제공할 서비스 유형 및 관리

1. 온라인 정보 제공 관리
2. 유형별(Case) 고객 응대
3.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관리



캠핑 고객에 대한 이해와 사업자 마인드 셋

1. 캠핑 인원 및 동반 유형별 고객 니즈 및 서비스 고려요소

» 영유아를 동반한 3인 이상 가족 캠퍼

■ 고객 니즈

- 체험활동의 참여 지수가 매우 높음
- 매번 새로운 자연환경속에서 자신만의 공간에 집을 짓고 주도적으로 의/식/주 활동을 하기에 아이들과 함께 하기에 최적화된 가족 레저
- 가족과 함께 즐기는 캠핑 인구가 전체 캠핑 인구의 70% 이상
- 캠핑장소 선택 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연환경(계곡, 산, 바다)을 찾고, 체험 활동 공간 유무(유아 놀이시설, 물놀이) 등 정보를 탐색함

■ 서비스 제공 고려요소

- 사이트 공간 외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유아 놀이시설, 모래 놀이터, 수영장, 자연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제공

» 연인/친구 등 3인 이하 소규모 캠퍼

■ 고객 니즈

- 20대 연인, 50대 부부 캠퍼 등 3인 이하 소규모인원으로 구성된 캠퍼들이 자연속에서 휴식을 즐기는 힐링캠프를 하는 경우가 증가함
- 다른 사람들의 방해받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캠핑을 즐기는 특징
- 자연 경관 및 사이트 규격, 간격 등 자신만의 공간인 사이트 정보 탐색 니즈가 강함

■ 서비스 제공 고려요소

- 캠핑장 내 사이트 구성 시 소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캠핑존(프라이빗) 제공을 통해 고객군을 분리하여 운영
- 사이트 규격, 간격을 보다 넓게 구성

2. 숙박 유형별 고객 니즈 및 서비스 고려요소

» 오토캠핑

■ 고객 니즈

- 사이트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짐
- 자신의 텐트에 맞는 사이트 공간이 충분한지, 짐을 적재/하차하는 주차 공간이 충분한지 등 신뢰도 높은 정보를 요구함
- 화장실, 개수대, 인터넷 환경 등의 기본 편의시설 구비 정보 등에 대해 사전 정보 탐색

■ 서비스 제공 고려요소

-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사이트 크기, 형태, 주차 가능여부,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제공
- 고객이 서비스 이용 전 숙지한 정보가 실제 이용에도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신뢰도)에 많은 관심

» 글램핑/카라반

■ 고객 니즈

- 캠핑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으나 처음 캠핑을 하거나, 캠핑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
- 대다수 20~30대 연령대 연인 캠퍼
- 캠핑장 내 제공하는시설(시설 내부, 화장실 등) 대한 청결도, 외부 자연환경 등 구비 시설에 대한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

■ 서비스 제공 고려요소

- 이용 편의성이 고객 인입의 주요한 역할을 하기에 시설 환경이 매우 중요함
- 고객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 환경(예약 페이지, SNS 등)에 사진 정보를 적절히 제공
- 주변 동일한 경쟁업체의 숙박 시설 퀄리티/가격을 고려한 경쟁력 있는 가격/혜택 제공

3. 고객의 정보 습득 이용환경

» 고객 환경

- 전체 캠핑 인구의 약 84.2%가 온라인을 통해 캠핑정보를 습득함
- 시설 이용의 후기, 사이트 예약 정보들은 포털, 플랫폼 등을 통해 확인함
- 사진/영상 등 시각 콘텐츠 정보는 SNS를 통해 정보를 탐색함

» 서비스 고려요소

-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채널(플랫폼, SNS, 카페 등)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함

4. 사업자 마인드셋

고객의 캠핑장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궁금증을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 고객의 만족도를 증진하는 것

캠핑장사업자가 제공할 서비스 유형 및 관리

1. 온라인 정보 제공 관리

» 캠핑장 예약 및 시설 정보

- 예약 오픈일자 정보
 - 일반적으로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등 사이트예약 오픈 정보 환경이 각 캠핑장마다 상이함
 - 운영하는 플랫폼, 카페, SNS채널을 통해 반드시 공지(알림)함
 - 예약 시스템 등을 사전 체크함
- 사이트(객실) 정보
 - 사이트 규격, 바닥 환경(데크, 파쇄석), 사이트 주차 여부 등 정보에 대해 누락없이 전달
 - 시각적 이미지(사이트 환경) 제공
- 편의 시설 정보
 - 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화장실, 개수대, 체험시설)을 사진으로 정보 제공
 - 시설 보수로 인해 사진이 변경될 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 관리

» 취소 및 환불 등 운영 정책 정보

- 소비자가 권고하는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성수기/비수기, 주중/주말 등 구분하여 위약금 환불 정책을 공지하여 고객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음 *붙임1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약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 대한 환불정책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게 예약 사이트에 공지하고 관리하면 운영관리를 효율화 할 수 있음

» 고객과의 소통 채널 관리

- 고객과 소통하는 채널(예약 사이트 후기 관리, SNS, 포털 카페)에 고객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캠핑장 이벤트 등 소소한 정보 소통 채널을 운영함

2. 유형별(Case) 고객 응대

» 예약 및 시설 정보 등 이용 문의

- 온라인 정보 제공 채널 안내
 - 캠핑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약/시설 정보 내용 채널을 유선/문자 등으로 안내함

■ 사이트 및 이용 일자 변경 문의

- 캠핑 이용자 경우 일반적으로 2주~1개월 전 예약함
- 가능하다면 고객들의 요청에 일자 변경을 해주는 것이 고객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음

■ 고객 소통 채널 유지

- 캠핑장과 연락 채널이 잘 유지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는 고객이 많음

평일(오전 9시~ 저녁 8시) : 전화 상담 가능,

저녁 9시 이후 문자로 남겨주시면 익일 순차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연락 수단(채널) 운영시간을 게시판에 공지함

» 취소/환불 문의

■ 귀책 사유 별 문의 응대 요령

- 고객 변심(개인 사유) 환불 : 운영 정책(취소/환불)에 대해 설명하고 조치함
- 캠핑장 귀책 환불 : 중복 예약, 캠핑장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용 불가 처리 시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치함(할인 쿠폰, 재방문 쿠폰 등을 적절하게 활용)

■ 천재지변/기상악화 등에 의한 환불 요청

- 소비자가 권고하는 기상상황(호우주의보, 강풍주의보 등)에 대한 부분을 운영정책(취소/환불)에 표기하여 공지함
- 기상 악화 시 체크인 고객들에게 2일~3일 전 고지함(문자, 유선)

» 캠핑 이용 중 고객 클레임

■ 야간 소음 등 민원 클레임

- 고객 체크인 시 매너타임 운영시간 안내 및 입실 중인 고객들에게 문자로 안내함
- 민원 입실 시 해당 사이트 고객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함으로써 고객들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함

■ 시설 이용 클레임

- 화장실 휴지 비치, 개수대 세척제, 허용 전기 전력 초과로 전기차단 등 문의가 많음
- 예방 차원에서 정기 순찰을 통해 해당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함
- 해당 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고객과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함

3.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관리

» 입실 체크인 시 서비스 응대

- 고객들은 캠핑 이용기간 중 체크인 시 캠핑장에 대한 인식이 가장 많이 남음
- 첫 대면시 이용 서비스에 대한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을 친절하게 안내

» 정기 순찰을 통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관리

- 체크인 후 일정 시간(오후, 야간) 순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함
- 순찰간 고객들과 대화를 통해 불편사항은 없는지 확인함
-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운영하는 사업주를 신뢰할 수 있게 됨
- 서비스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붙임1] 취소 및 환불 등 운영 정책 정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 숙박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1) 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손해배상
2)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손해배상
3) 비수기 주중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 숙박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4) 비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 계약금 환급
7)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위약금 50% 감경

2024

야영장 사업자

안전관리

매뉴얼

8



8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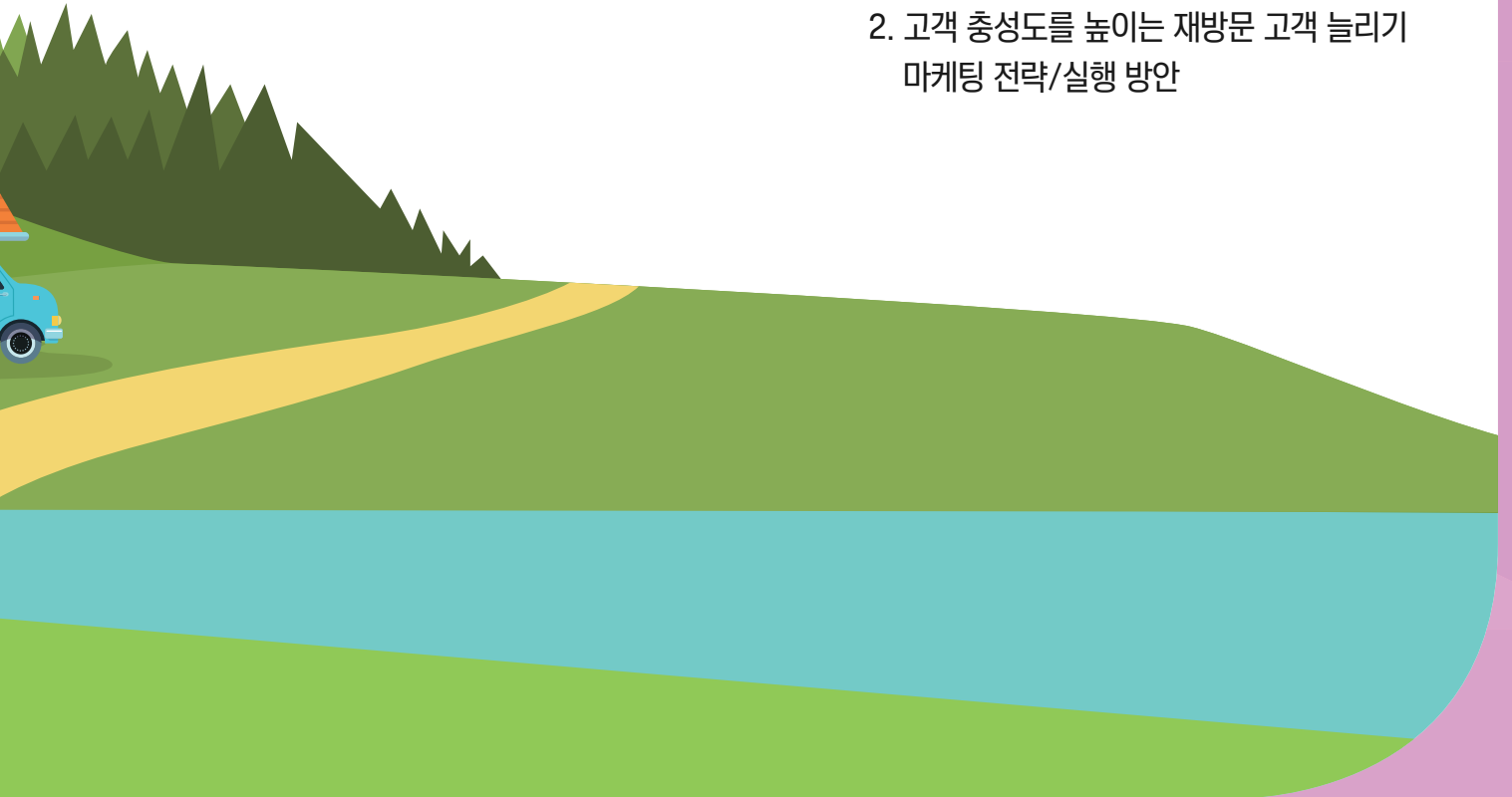
캠핑장 마케팅의 이해와 실무

캠핑장 마케팅 이해와 필요성

1. 마케팅이란?
2. 마케팅의 구성 요소
3. 마케팅의 필요성

매출 향상을 위한 마케팅 기법

1. 신규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실행 방안
2.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재방문 고객 늘리기
마케팅 전략/실행 방안



캠핑장 마케팅 이해와 필요성

1. 마케팅이란?

» 마케팅의 정의와 목적

- 캠핑장 이용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
-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 내는 것
-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장기적인 사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

2. 마케팅의 구성 요소

» 제품(Product/Service)

- 캠핑 이용시설/서비스
- 캠핑장 필요 구비 시설 : 기본 시설(야영 사이트, 전기, 화장실, 개수대), 편의시설(매점, 유아 놀이시설, 체험시설, 무선인터넷)
- 다른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감자 캐기, 요리 프로그램) 운영



놀이 시설



체험 프로그램

» 가격(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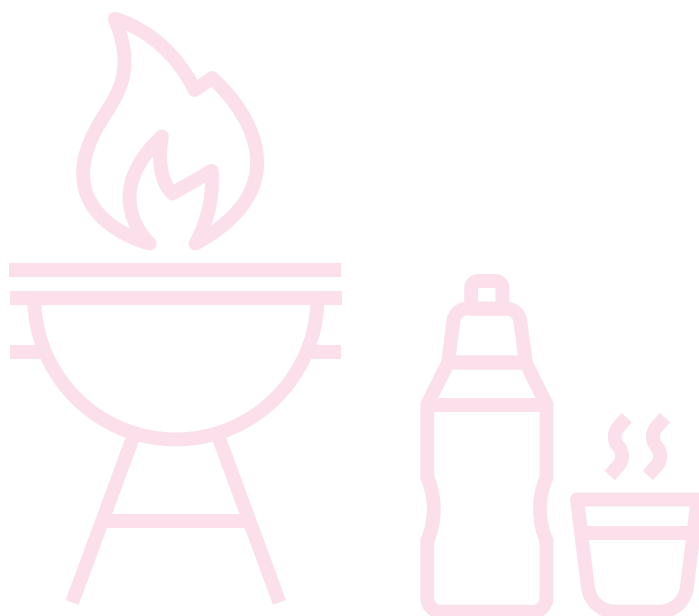
- 캠핑장을 선택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요소
- 차별화를 위해 다른 주변 경쟁자 비교 분석
- 서비스 가치(시설 퀄리티, 캠핑환경 등) 기반을 고려하여 설정
- 특정 기간 가격 할인 및 프로모션을 통해 판매를 촉진하는 전략 활용

» 유통(Place)

- 캠핑장 서비스 이용을 경험하게 되는 고객 경로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부분
- 고객들이 캠핑장을 이용하는 접점의 채널 관리
- 고객들과 접점 채널은 예약을 하는 채널(홈페이지, 플랫폼), 커뮤니티 소통(SNS, 카페)채널
- 소통은 고객과의 관계십을 유지할 수 있고, 고객의 캠핑 여정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

3. 마케팅의 필요성

- » 더 많은 고객 유치
- » 수익 증대
- » 경쟁 우위 차지
- » 성장동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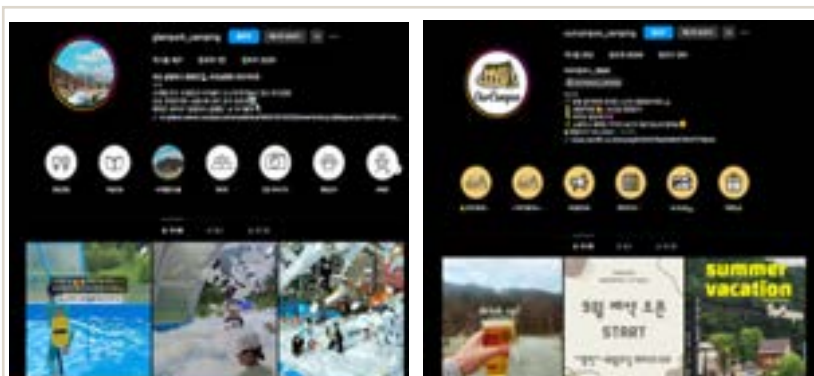
매출 향상을 위한 마케팅 기법

1. 신규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실행 방안

» 소셜 미디어 마케팅

■ 소셜 채널 운영(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 캠핑 고객 다수는 SNS 채널을 통해 자신의 캠핑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습득함
- 고객이 주로 활동하는 SNS 채널에 여러분들의 캠핑장 브랜드 노출을 통해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음
- SNS 채널을 통한 캠핑장 서비스, 이용시설 등 이미지, 숏컷 영상 등 콘텐츠를 게재함



소셜 채널 운영 예시(인스타그램)

■ 콘텐츠 마케팅

- 콘텐츠 발행 주기: 최소 주 3회 이상
- 콘텐츠 내용: 캠핑장 전경(계절별, 시차별(오전/오후/야간)) 편의 시설, 이벤트, 오픈일정



콘텐츠 마케팅 예시(인스타그램)

» 프로모션 마케팅

■ 신규 이용 고객 할인 프로모션

- 마케팅 구성요소 중 가격(Price)은 고객 구매 결정 요소에 큰 비중을 차지함
- 온라인으로 캠핑장 이용 가격 검색 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려는 욕구
- 첫 신규 방문 고객을 유입시키는 할인 프로모션은 많은 관심과 모객할 수 있는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예시(인스타그램)

■ 인플루언서 체험단 마케팅

-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신규 고객을 모객하고 캠핑장을 바이럴(Viral)할 수 있는 방법
 - 인플루언서들에게 캠핑장 이용권 혜택을 제공하고, 그를 통해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채널에 관련 콘텐츠를 게재하고 자신의 팬(Fan)에게 캠핑장을 소개하는 방식
 - 인플루언서 체험단을 모집하는 방법
- ① 캠핑과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에게 DM(Direct Message)으로 제안
 - ②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를 통한 직접 모집



인플루언서 콘텐츠 예시(인스타그램)

» 고객 관리(CRM) 마케팅

■ 고객 커뮤니케이션 측면

- 캠핑장 이용 전 온라인으로 정보 탐색 외 직접적으로 사이트, 편의시설, 예약관련 문의 등 캠핑장에 연락을 통해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고객이 존재함
- 각 캠핑장마다 고객 응대방법(문자, 카페, 전화)도 다양하나 연락 체계 수단(채널), 고객 센터 운영시간 등을 운영 채널(카페, 예약 홈페이지, SNS)에 명확히 공지하고 운영함

2.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재방문 고객 늘리기 마케팅 전략/실행 방안

» 프로모션 마케팅

■ 재방문 리워드 마케팅

- 첫 방문 이후 재방문유도를 위한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충성고객을 만드는 가장 유용한 마케팅 도구
- 재방문 쿠폰: 정액제(예: 1박 이용시 5천원 쿠폰 증정), 정률제(예: 이용금액의 10% 할인)
- 전달 수단: DM(SMS, LMS, 카카오톡메시지) 및 캠퍼장이 운영하는 채널(SNS, 카페, 플랫폼)

■ 정기적 행사 이벤트 마케팅

- 벚꽃 시즌(5월), 할로윈(10월) 등 특정 기간 수요가 몰리는 시즌에 이벤트 및 행사 주최
-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고객 경험 제공



■ 고객 리뷰 이벤트

- 고객이 자신의 캠핑 경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전략
- 고객이 캠핑장을 이용하고 콘텐츠 후기를 예약 채널,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소셜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공유하도록 캠페인 진행
- 고객들의 콘텐츠 생산 및 소비가 재방문 유도를 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
- 고객이 주로 활동하는 SNS 채널에 여러분들의 캠핑장 브랜드 노출을 통해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음
- SNS 채널을 통한 캠핑장 서비스, 이용시설 등 이미지, 숏컷 영상 등 콘텐츠를 게재



» 캠핑장 이용 서비스 개선

■ 고객 유치 관점

① 캠핑장 시설

- 체험 놀이 시설(키즈카페, 수영장, 유아 놀이터) 구비
- 사이트 내 개별 화장실/ 샤워 시설 구비



② 서비스

- 고객 유형별 캠핑존 제공 : 두 가족 사이트, 반려견 전용 사이트
- 편의용품 비치 : 드라이기, 전자레인지, 샴푸/바디워시용품, 세척장에 세척제 구비
- Late 체크아웃 서비스 : 체크인 당일 해당 사이트 입실 고객이 없다면 여유롭게 체크인아웃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2024

야영장 사업자

안전관리

매뉴얼

9



9차시 지속가능한 야영장을 위한 환경과 위생

위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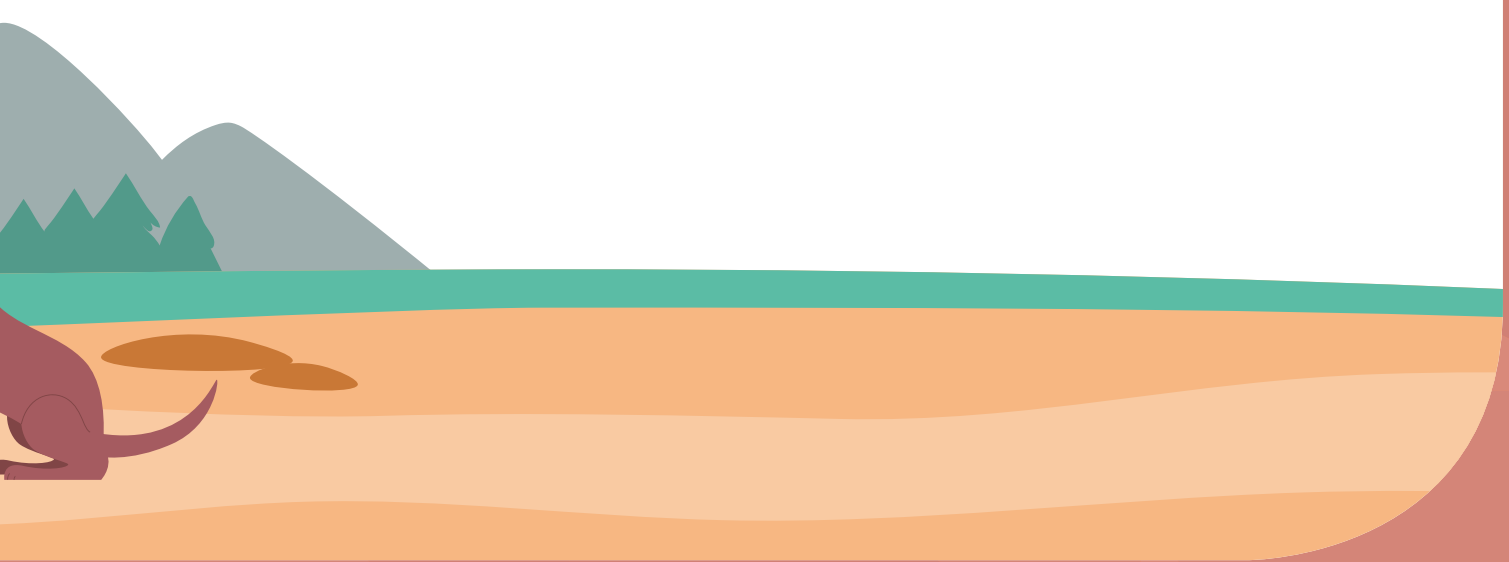
1.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등의 관리방안

환경관리

1. 올바른 분리수거
2.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운영 시 주의사항

1.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운영 수요
2. 안전 관련 사항
3. 규칙 및 정책
4. 서비스 및 편의시설



위생관리

1.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등의 관리방안

» 화장실

- 화장실 내 변기, 소변기, 싱크대, 바닥 등은 매일 최소 2회 이상 소독 및 청소함
- 화장실 칸이 얼마 없을 때에는 최소 3회 이상 공간을 둘러보아야 함
- 화장실에는 항상 충분한 양의 휴지를 공급함
- 고장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칸마다 기재함
- 화장실 내 쓰레기통은 빈번하게 비우고,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함

» 샤워실

- 샤워실 내 샤워 부스, 바닥, 탈의실 등 역시 매일 최소 2회 이상 소독 및 청소함
- 샤워실 칸이 얼마 없을 때에는 최소 3회 이상 공간을 둘러보아야 함
- 샤워실의 수압은 적절히 유지되어야 하고 온수는 충분히 공급함
- 고장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칸마다 기재함
- 샤워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야 안전함

» 개수대

- 조리대, 싱크대,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등 주방 시설은 매일 사용 후 소독 및 청소함
- 매일 최소 2회 이상 소독 및 청소해야 하고 개수대 주변 물이 흐르지 않도록 조치함
- 발생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도록 안내하고 타입별 쓰레기통을 비치함
- 개수대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에 신경 씀

환경관리

1. 올바른 분리수거

» 분리수거 안내 및 관리



- 세탁 야영장 내에 충분한 수의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비치함
- 일반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숯 전용 드럼통 등 각 종류별로 구분함
- 야영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큰 안내표시를 하고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방법을 안내함
- 음식물 쓰레기통은 야영장 곳곳 여러 곳에 지정하여 비치함
(각 구역의 개수대 앞에 별도 비치)
- 일반쓰레기 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음식쓰레기를 넣으시면 안 된다고 정확히 안내함
(지자체에서 수거해 가지 않음을 함께 언급함)
- 장작이나 차콜 등 사용하신 후 재나 숯을 사이트 내에 버리고 방치하거나 주변
(특히 잔디)에 뿌리는 행위는 절대금지 사항임
- 재나 숯은 분리수거장의 숯 전용 드럼통 이용을 안내함
- 재활용품은 지자체나 폐기물 처리 업체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수거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음
-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며, 수거 업체에 연락하여 수거 일정을 확인하고 협조함

2.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 등장 배경

- 오랜 시기 동안 환경과 경제는 서로 상충(Trade-off) 관계를 유지해 옴
- 기후변화 등의 전지구적 여건 속에서 이러한 상충 구조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필요로 하는 구도로 전환됨
- 환경을 저해하던 오염물질들을 활용하여 경제를 성장시켜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됨
-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대표하는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Upcycle) 개념

» 캠핑에서의 필요성

- 야영은 자연과 교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지만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 지속가능한 야영을 위해서는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함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운영 시 주의사항

1.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운영 수요

-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려는 캠핑은 반려동물에게도 특히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음
- » 현재까지는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캠핑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 친화적인 캠핑장은 희소성을 가질 수 있음
- » 적절한 시설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준비하여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캠핑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2. 안전 관련 사항

» 구역 설정

- 반려인의 휴식이 필요한 만큼 일반인(비반려인)에게도 휴식이 필요함
-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마찰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캠핑장 반려동물 전용 사이트를 지정하여 구분하여 운영함

» 안전 관리

- 반려동물을 위한 응급 처치키트를 준비함
- 캠핑장 관계자들이 기본 응급 처치를 숙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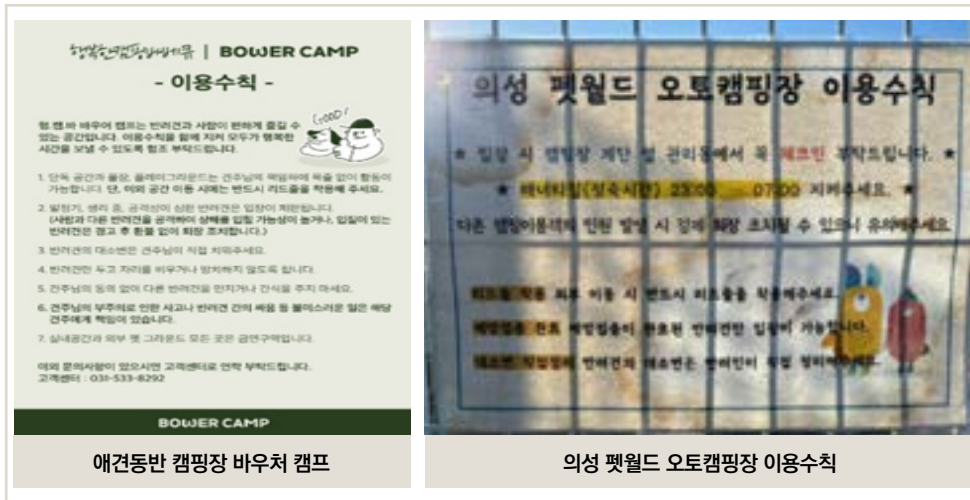
» 캠핑장 내 관리를 위한 약품 사용 시 사전 확인

- 캠핑장내 식물을 관리하기 위한 유박 비료의 경우 반려견의 간식의 형태와 유사한 제품들이 많아 반려견에게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제초제와 살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용해야 함

3. 규칙 및 정책

» 캠핑장 규칙 및 책임 의무 고지

- 캠핑장 규칙: 반려동물 동반 고객이 지켜야 할 규칙을 명확하게 안내함
- 책임 의무: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 반려동물 동반 입장에 대한 이용 수칙을 사전 고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분쟁에 대비함
- 반려동물 동반 이용 구역을 제한하는 경우 반려동물이 동반 할 수 있는 구역과 동반할 수 없는 구역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캠핑장 운영 상황에 따라 작성)



4. 서비스 및 편의시설

» 설치 시설

- 캠핑장의 운영 상황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서비스나 편의시설을 추가함
-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사이트에는 안전한 울타리를 설치함
- 반려동물과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이나 물놀이 시설(풀장)을 설치함



2024

야영장 사업자

안전관리

매뉴얼

10



10차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야영장 운영 비법

캠핑장 운영 Q&A



캠핑장 운영 Q&A

Q1

자동차 야영장업과 일반 야영장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 자동차야영장에 비하여 일반야영장은 확보해야 하는 공간과 제공되어야 하는 시설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음
- 자동차야영장은 차량1대 당 제공 면적이 50㎡ 이상으로 차량과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옆에 있어야 하는 것에 비하여, 일반야영장은 차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막 1동당 15㎡ 이상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Q2

글램핑텐트·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시설 간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세워진 걸까요?

A

- 19년 3월 4일「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야영용 시설(글램핑텐트와 카라반시설)은 화재 발생시 화재의 확장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각 시설간 3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함
- 이격거리 측정에서 사업주와 지자체담당자들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음
- 올바른 측정은 최단거리를 측정하였을때 최소 3미터이상 이격되어야 함
- 이때 글램핑이나 카라반에 포함된 상시시설도 포함됨
- 상시시설은 우천이나 바람불때도 편안한 휴식과 바비큐 활동을 위해 설치한 야영용시설과 연결하여 설치한 화장실,샤워시설,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Q3

글램핑텐트, 카라반만 운영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A

- 야영장업은 기본적으로 야영에 적합한 시설이나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기에
- 편익시설인 글램핑텐트, 카라반만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함
- 기본시설인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최소한 1면이라도 갖추어야 함

Q4

방염 성능 천막은 무엇이고, 방염 성능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A

- 야영용 시설인 글램핑텐트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는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적합성을 통과한 시험성적서를 운영전에 제출하여야 함(관광진흥법령)
- 검사는 연소시험과 연기밀도 시험을 통과해야 함
- 연소시험은 글램핑텐트 천막의 야외 설치 특성상 비, 눈 등으로 인하여 천의 방염성능 저하를 고려하여 '내 세탁성 검사(세탁 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검사)'도 적합해야 함
- 식물뿐만 아니라 PVC소재도 글램핑텐트 천막의 소재로 활용된 경우에는 각각의 소재가 모두 방염성능 시험에서 적합으로 통과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함
- 2층 이상의 복층 형태로 설치 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야영장 시설의 편익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재질,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해야 함
- 설치하고자 하는 글램핑텐트 시설의 시방서(도면 포함)를 가지고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고 진행함
- 2층 침대의 형태나 1층은 쉬는 공간이고 2층은 침실공간으로 꾸미는 일반적인 형태는 가구형태로 인정되고 있으나 건축물의 정의에 해당하는 지붕, 벽, 기둥이 천막의 내부에 존재한다면 건축물로도 볼 수 있음
- 한 면이라도 벽면을 세우고 지붕(일부라도)을 덮은 형태로 복층을 구성한다면 자칫 건축물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 절대 이러한 형태로 설치하면 안됨

캠핑장 운영 Q&A

Q5

우주선 카라반이나 이동형 주택 등을 개조해서
카라반으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A

-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용 트레일러는 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이동하도록 구동이 가능한 바퀴나 견인장치를 설치해야 함
- 지게차에 의해 들어 올려져서 이동하거나 견인 장치를 구현하기 위해 단순 고리만 용접으로 붙여 놓거나 구동이 안되는 바퀴를 부착한 경우에는 불가할 수 있음
- 바로 계약 하기보다 해당 이미지와 사양서 등을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Q6

글램핑텐트 시설 또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등재가 안되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은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A

- 야영장을 조성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음
- 「건축법」규정 및 「관광진흥법」등록기준에 따라 야영장 시설 용도 건축물은 그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면서, 300㎡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함
- 글램핑텐트는 야영장의 편의시설 중 야영용 시설로 그 소재가 천막으로 되어 있어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기에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추가적으로 산정되지 않음

Q7

야영장 부지 내 타업종을 같이 해도 되나요?

A

- 야영장 부지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야영장 시설의 편익 시설로는 불가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조의2(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위생법령의 식품접객업소로서 별도의 영업신고 대상임
- 용도 지역에 적합하다면 야영장 사업부지와 분리하는 지적분할을 통해 음식점, 카페 등의 건축행위는 가능함
- 이 경우, 사업부지의 변경사유에 해당되므로 야영장업도 변경등록 신고와 보험사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정정 가입을 해야 함
- 최종적인 결정은 해당 지자체 건축부서, 관광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2024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매뉴얼





부 록

1. 고캠핑 홈페이지(gocamping.or.kr) 소개
2. 야영장업 서류심사 등록시 체크리스트
3.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
4. 야영장업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5. 안전·위생점검 체크리스트(지자체용)
6. 정부의 야영장업 지원사업
7. 방염성능검사 요약서
8. 지하수 음용수 수질검사 성적서
9. 위반사항 벌칙조항(타법 포함)
10.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11.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증권
12. 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
13. 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의 한도



01 고캠핑 홈페이지 소개

gocamping.or.kr

01 목적

-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전국 등록 야영장 종합 정보포털
*전국 약 4,130개소(24.10월 기준)

02 주요내용

- 정부 새울시스템 활용 고캠핑 홈페이지 내 전국 등록야영장 정보
*새울시스템 : 국가행정정보망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인허가 정보 실시간 관리
- 사업자 요청 시 야영장 정보 및 사진 업데이트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요사업 소개

03 야영장 사업자 대상 온라인 교육 시스템 운영(법정 필수 교육)

- 교육근거 | 「관광진흥법」제2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및 [별표7]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제5호타
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교육 포함) 연1회 이상 의무 이수

04 안전한 캠핑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공사 고캠핑 데이터 연동 네이버(NAVER) 지도 검색 시 캠핑장 관광사업자 등록 정보 제공

네이버 표출 화면



02 야영장업 서류심사 등록시 체크리스트

- 야영장업 등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아래 정렬된 서류 외에도 야영장업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NO	문서명	구비여부	비고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	
3	신청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번호 기재)	☐	
4	임대차계약서	☐	임대일시 해당 (임대인이 다수인 경우 임대인 전부 계약서 필요)
5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인터넷 열람 후 출력
6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법인만 해당
7	토지사용승낙서	☐	승낙서 및 승낙자 인감증명
8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토지의 평면도에 텐트가 설치되는 위치의 배치도 필요
9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	☐	별지 제3호의2 서식
10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	
11	건축물대장이나 가설건축물 대장 (도면 포함)	☐	건축도면이 포함된 가설(건축물)대장 (화장실 등 확인 필요)
12	대피소 사용 승낙서	☐	주변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해당자만)
13	하수처리시설 준공서류 및 오수량산정표	☐	정화조설치시 하수처리시설 준공서류, 오수량산정표(없을시 새로 하수처리시설 준공)
1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시설이 추가된 경우
15	상수도 설치 확인서	☐	
16	기타 서류()	☐	
17	기타 서류()	☐	

03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

상호(명칭)		대표자		세부업종	
소재지				영업개시일	
입지	토지용도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여부			
관리면적 및 운영현황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1일 최대 수용인원	야영사이트수	운영일수
	(㎡)	(㎡)	(명)	(개)	(일)
편의시설 (규격, 면적, 개수, 용량 등 기입)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취사시설	샤워실
안전장치 등 (위치, 수량 등 기입)	소화기	확성기 등 방송장비	안전계시물	대피공간	관리요원
진입로	*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				
주차시설	대 (㎡) / 야영지와의 거리(m)				
기타부대시설	*야영용 트레일러,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				

04 야영장업 서류심사 등록시 체크리스트

신청일		현장점검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등록신청 세부업종	☐ 일반야영장업 ☐ 자동차야영장업			
야영장 명칭	야영장 개장일			
야영장 주소	(전화:)			
부지 면적	m ²	건축 연면적	m ²	
부지 용도	야영사이트수			
1일 최대 수용인원	명	(일반야영/자동차야영 구분) 개		
시 설	☐ 상수도시설 ☐ 하수도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화장실 ☐ 글램핑텐트 ☐ 야영용 트레일러 ☐ 물놀이장 ☐ 놀이시설 ☐ 기타()			
주차 시설	주차대수 : 대 / (주차장 면적 : m ²)			
점검 사항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비 고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성 여부	☐ 적격	☐ 부적격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시 행동요령 등 게시 여부	☐ 적격	☐ 부적격	
	비상시 긴급상황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확보 여부	☐ 적격	☐ 부적격	확성기 등
	소화기 확보 및 배치 여부	☐ 적격	☐ 부적격	야영용 천막 2개소(100m ²)마다 1개 이상
	글램핑텐트, 야영용 트레일러 등 시설물 소화설비 구비여부	☐ 적격	☐ 부적격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 비상손전등
	글램핑텐트 방염천막 사용여부	☐ 적격	☐ 부적격	
	야영용 트레일러, 야영시설(글램핑텐트) 이격거리 유지여부	☐ 적격	☐ 부적격	시설물간 최단거리 3m 이상 이격
	대피소 및 대피로 확보 여부	☐ 적격	☐ 부적격	
	관리요원 상주 여부	☐ 적격	☐ 부적격	
	1개당 야영 사이트 규모 준수 여부	☐ 적격	☐ 부적격	일반야영장-천막 1개당 15m ² 이상 자동차야영장-천막 1개당 50m ² 이상
	야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기준 충족 여부	☐ 적격	☐ 부적격	
	야영장 진입로 기준 충족 여부	☐ 적격	☐ 부적격	1차로 이상, 1차로인 경우 교행가능 구간 필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충족 여부	☐ 적격	☐ 부적격		
야영장업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현장감사 및 질의응답 결과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조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이 상기 작성한 사항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5 안전·위생점검 체크리스트(지자체용)

대상 사업체

사업체명			
대표자명		연 락 처	
주 소			

대상 사업체

사업 유형	□ 일반야영장 □ 자동차야영장		1일최대이용 가능인원		
관리(소유)	□ 중앙정부 □ 광역시 □ 시 □ 도청 □ 군청 □ 구청 □ 마을공동 □ 개인		입지유형	□ 산·숲 □ 계곡 □ 바다 □ 하천·강 □ 도심 □ 기타	
부지면적	km ²	건축연면적	km ²	야영사이트수	개
진입로	□ 포장 □ 비포장, 차선(m)		주차시설	대	
공동 사용 시설	매점(동), 관리실(동), 창 고(동), 화장실(동)				
대피소 (유무, 위치 등 기입)			소화기(방화사) (위치, 수량 등 기입)		
안전계시물 (위치, 수량 등 기입)			누전차단기 (개수, 관리상태 등 기입)		
확성기 및 방송장비 (위치, 수량 등 기입)			관리요원	명	
기타 숙박시설 (수량 기입)	□ 글램핑텐트	개	□ 야외용 트레일러	개	
	□ 펜션	개	□ 기타 숙박시설	개	
기타사항					
비고	전기시설 점검 확인여부				
	가스시설 점검 확인여부				

06 정부의 야영장업 지원사업(2024년)

01 추진 배경

- 야영장 수 지속 증가* 등 야영 수요 확대 추세에 따라 안전한 야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발전 도모

*등록야영장 수: ('19) 약 2,233개 → ('20) 약 2,363개 → ('21) 약 2,703개 → ('22) 약 2,935개

- 차량 이용 캠핑 오·폐수의 하천·하수구 방류 문제 해결 및 지역과 상생하는 캠핑 활성화를 위해 캠핑카 활용 야영 기반 구축*

*전기, 급수 및 오폐수 처리시설 등을 포함하는 캠핑카 인프라(Dump Station) *설치 지원('22년~)

03 지원사업내용

세부사업명	2023년 예산	지원규모(국비)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지원	2,410백만원	· (공공) 사업체당 최대 4천만 원 · (민간) 사업체당 최대 2천만 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526백만원	· (공공) 사업체당 최대 3천만 원 · (민간) 사업체당 최대 1.5천만 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732백만원	· (공공) 프로그램당 최대 1억 원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449백만원	· (공공) 사업체당 최대 6천만 원 · (민간) 사업체당 최대 3천만 원

07 방염성능검사 요약서

01 얇은포/두꺼운포 구분

- 가로/세로 1m의 방염천의 무게를 측정
- 450g이하 (얇은포) 450g이상 (두꺼운포)

02 시험기준

종류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면적	탄화길이	접염횟수	내세탁성(전/후)	최대 연기밀도
얇은포	3초 이내	5초 이내	30cm ²	20cm	3회 이상	기준 내/외	200 이하
두꺼운포	5초 이내	20초 이내	40cm ²	20cm	3회 이상	기준 내/외	200 이하

- “얇은 포”란 포지형태의 방염성능검사물품(이하 “방염물품”이라한다)으로서 1m²의 중량이 450g이하인 것을 말한다.
- “두꺼운 포”란 포지형태의 방염물품으로서 1m²의 중량이 450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탄화면적”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면적을 말한다.
- “탄화길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이를 말한다.
- “접염횟수”란 불꽃에 의하여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를 말한다.
- “용융하는 물품”이란 불꽃에 의하여 녹는 물품을 말한다.
- “잔염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 “잔신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 (잔염이 생기는 동안의 시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내세탁성”이란 세탁한 경우에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선처리물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물품을 말한다.
- “현장방염처리물품”이란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된 물품을 말한다.

03 내세탁성 기준

- 커튼, 암막 및 직물로 제조된 무대막(벨벳류·부직포는 제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5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1. 세탁기는 세탁조가 직경 50cm 이상, 깊이 27cm 이상으로 수평으로 설치된 가정용 세탁기를 사용한다.
 2. 세탁하는 동안의 물의 온도를 (40 ± 3) °C로 유지시켜야 한다.
 3. 세제는 중성세제로 하며, 물 1 ℓ 당 1 g의 비율로 첨가한다.
 4. 세탁은 세탁시간 30분, 행굼 2회, 탈수를 1회로 한다.
 5. 건조는 5회 세탁 완료 후에 텀블 건조기로 실시한다.

소방청고시(2019.1.10. 시행) 방염성능기준 각색

04 의뢰시험 성적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차남로 30
TEL: 031-250-4100 FAX: 031-250-4101

의뢰시험성적서

제 1902284 호

1. 신 청 인
 - 업체명 : 한국관광공사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1층(반곡동, 한국관광공사)

2. 시 료 명 : 폴리옥스포드 500 D (국내)

3.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 2019. 4. 1. / 제1902284호

4. 시험결과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결과										비고	
		세탁전					세탁후						
		1	2	3	4	5	1	2	3	4	5		
잔 염 시 간	3 초 이내	1.2	2.1	0.0	-	-	2.3	0.0	2.7	-	-		
잔 신 시 간	5 초 이내	0.0	0.0	0.0	-	-	0.0	0.0	0.0	-	-		
잔 화 면 적	30 cm 이내	7.2	6.2	6.4	-	-	10.2	9.1	14.7	-	-		
잔 화 길 이	20 cm 이내	4.2	3.3	3.2	-	-	4.5	4.0	5.7	-	-		
잔 염 횟 수	3 회 이상	4	4	4	4	4	4	4	4	4	4		

용 도 : 자체참고용(본 의뢰시험성적서는 소방설비원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조건 : 온도 (20.0 ± 15.0) °C, 습도 (50 ± 30) % R.H.
 시험방법 : 발염성능기준(소방산업기술원 제 1902284호)

5. 시험담당자 : 이화학분석부 (소방산업기술원 제 1902284호)

2019년 4월 9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비고 1. 위 시험결과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에 대한 결과이며, 시료의 명칭은 의뢰자가 제시한 것입니다.
 2. 이 시험성적서는 당 기술원의 승인 없이 홍보, 광고, 선전, 소송 및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몰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총 : 1페이지 중 1페이지

의뢰시험과 관련하여 시험담당자의 근무, 방문, 연락제공 요구 등 부담행위가 있는 경우 기술원 콜센터(031-259-29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8 지하수 음용수 수질검사 성적서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지하수 음용수(전항목) 시험성적서 교부

「지하수법」 제9조 제5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를 봉보합니다.

시 료 명	지하수 음용수(전항목)	검수번호	AAA-00-B0000
의뢰자		검사목적	준공검사용
채수장소		신고번호	
		검수일자	2018.12.20
		채수일자	2018.12.20

NO	시험항목	기 준	시험결과	NO	시험항목	기 준	시험결과
1	일반세균	100 CFU/100ml 이하	0	24	벤젠	0.01 mg/L 이하	불검출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25	톨루엔	0.7 mg/L 이하	불검출
3	분변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26	에틸벤젠	0.3 mg/L 이하	불검출
4	납	0.01 mg/L 이하	불검출	27	크실렌	0.5 mg/L 이하	불검출
5	질소	1.5 mg/L 이하	불검출	28	1,1-디클로로에틸렌	0.03 mg/L 이하	불검출
6	비소	0.01 mg/L 이하	불검출	29	시안화탄소	0.002 mg/L 이하	불검출
7	세레늄	0.01 mg/L 이하	불검출	3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 mg/L 이하	불검출
8	수은	0.001 mg/L 이하	불검출	31	1,4-다이옥신	0.05 mg/L 이하	불검출
9	시안	0.01 mg/L 이하	불검출	32	경도	1000 mg/L 이하	45
10	크롬	0.05 mg/L 이하	불검출	33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mg/L 이하	1.0
11	암모니아성질소	0.5 mg/L 이하	불검출	34	염색	없음	없음
12	불산성질소	10 mg/L 이하	1.5	35	맛	없음	없음
13	카드뮴	0.005 mg/L 이하	불검출	36	중	1 mg/L 이하	불검출
14	보론	1.0 mg/L 이하	불검출	37	색도	5도 이하	1
15	세슘	0.005 mg/L 이하	불검출	38	세제(음이온계연화성제)	0.5 mg/L 이하	불검출
16	다이이치론	0.02 mg/L 이하	불검출	39	수소이온농도	5.8-8.5	6.8
17	카라비온	0.06 mg/L 이하	불검출	40	아연	3 mg/L 이하	불검출
18	페니트로티온	0.04 mg/L 이하	불검출	41	염소이온	250 mg/L 이하	7.7
19	커바릴	0.07 mg/L 이하	불검출	42	질	0.3 mg/L 이하	불검출
20	1,1,1-트리클로로에탄	0.1 mg/L 이하	불검출	43	당산	0.3 mg/L 이하	0.006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mg/L 이하	불검출	44	탁도	1 NTU 이하	0.50
22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mg/L 이하	불검출	45	황산이온	200 mg/L 이하	4
23	디클로로에탄	0.02 mg/L 이하	불검출	46	알루미늄	0.2 mg/L 이하	불검출

관 정	적합
수질기준 초과항목	

2018.12.27

09 위반사항 벌칙조항(타법 포함)

관계 법령	근거 조항	벌칙 및 행정처분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의 규정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 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 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83조(벌칙)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관계 법령	근거 조항	벌칙 및 행정처분
「건축법」	<u>제11조(건축허가)</u>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u>제20조(가설건축물)</u>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u>제108조(벌칙)</u>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제110조(벌칙)</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 공자
「하수도법」	<u>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u>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 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u>제76조(벌칙)</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u>제80조(과태료)</u>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아니한 자 *(1차)50만원→(2차)70만원→(3차)100만원

관계 법령	근거 조항	벌칙 및 행정처분
「농지법」	<u>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u>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u>제57조(벌칙)</u>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u>제14조(산지전용허가)</u>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u>제53조(벌칙)</u>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관계 법령	근거 조항	벌칙 및 행정처분
「자연공원법」	<u>제23조(행위허가)</u>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 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u>제27조(금지행위)</u>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u>제82조(벌칙)</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u>제86조(과태료)</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하천법」	<u>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u>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하천 및 하천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u>제95조(벌칙)</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10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등록취소 등) 다음 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2)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3)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마.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법 제7조 제2항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바.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사.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러. 법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9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고.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노.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업정지 20일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관광진흥법 제37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위반행위	과징금액
1. 법 제4조(등록) 위반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80만원 80만원 200만원
2. 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0만원
3.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야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4.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200만원

11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증권

보험증권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증권

1/2

상 품 명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증권 번호		계약일자	2019-07-0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2019년 07월 04일 00:00시부터 2020년 07월 04일 00:00시까지 이 보험계약에 기재된 증권발생자의 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1년 -개월 -일

*상기 사항에 계약자 본인의 사망(자연)이 아닌 경우 보험 통칙 조항에 변경될 수 있으나 회사로 연락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표지 국내소재

[1] 담보사항 : 야영장사고배상책임

▶ 목적물사항

순번	목적물명	목적물내역	산출기준
1		자동차 50대 이상	50대 - (31) 대
2		거대 시설	면적 - (8,444) m ²
3		계류장, 화장실시설, 샤워실, 화장실 시설	계수 - (6) 개
4		별내장(간여 수영장)	계수 - (2) 개
5		트램폴린	계수 - (1) 개

▶ 담보내역

순번	담 보 명	세 부 내 역	보험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목적물
1	야영장사고배상책임담보		WON 대한	1천만원	100,000,000	0
			WON 대동	1천만원	100,000,000	0
2	야영장사고배상책임담보		WON 대한	1천만원	100,000,000	0
			WON 대동	1천만원	100,000,000	0

▶ 보험료 및 분납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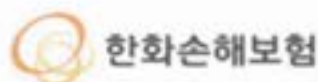
[보험료] WON 688,000 **[분납사항]** 일시납 1회차(100% 2019-07-04) WON 688,000

단체상해영업부

보험대리점 :

연락처 :

발행일 : 2019년 07월 31일



Hanwha General Insurance

12 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신설 2019.3.4)

제18조제7항제2호 관련

부상등급	한도 금액	부상 내용
1급	2천만원	-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 척추체 분쇄성 골절 -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막하 수종, 수혈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시행한 부상 -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상완골 삼각골절 -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급	1천만원	- 상박골 분쇄성 골절 -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또는 경추 탈구 (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경추보조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 슬관절 탈구 -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부상 - 천장골 간 관절 탈구 -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부상 -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부상등급	한도 금액	부상 내용
3급	1천만원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부상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족근중족(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출혈로 수술한 부상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48시간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부상 17.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4급	900만원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 인대 파열 5. 건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부상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 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 1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부상등급	한도 금액	부상 내용
5급	900만원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부상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부상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6급	500만원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부상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혈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7급	50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골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부상등급	한도 금액	부상 내용
8급	240만원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및 오혜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 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9급	240만원	1. 척추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은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 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탈구 및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0급	160만원	1. 외상성 슬관절 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및 완관절을 말한다) 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신전근건 파열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부상등급	한도 금액	부상 내용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2급	8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3급	8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4급	8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비고

-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 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13 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의 한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신설 2019.3.4)

제18조제7항제3호 관련

후유장애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1급	1억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8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 중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7천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후유장애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5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5천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4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3천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후유장애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9급	2천25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아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1천88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1천5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점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후유장애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12급	1천25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귀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천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63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1. 후유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팔다리에 가벼운 정도의 일부 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2024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